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인쇄/1998년 12월 26일

발행/1998년 12월 2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55-9

5,500원

연구 보고서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는 가장 적대적 집단이었던 남북한의 군을 하나로 융화시켜 통일한국의 군을 건설해 나가려는 군통합이 될 것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무리없이 군통합을 추진하였던 독일의 사례는 한국과 독일간 다차원적인 유사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군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연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통일독일의 군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서론

군통합은 복수국가 군대의 제반 기능 및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능 및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하나로 융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군의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군내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군통합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은 통일국가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유관국의 입장, 국방목표·정책 및 군사 전략의 재수립, 지휘체계와 조직의 개편, 인력과 물자의 질적·양적 통합, 군수물자 생산체계의 정리 등이다.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이 글은 논의의 초점을 ① 통일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4국의 입장과 여기에 대한 서독의 외교적 대응, ② 통일독일의 국방목표·정책 재정립과 군통합 추진과정, ③ 통일독일의 군내 인적 통합을 위한 노력 등에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군통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군사·안보문제

독일통일에 대한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국제적 합의는 1980년대 후반 긴장완화정책의 진전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정치적 상황의 전개와 분리하여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무엇보다 독일국민, 특히 동독주민의 열망과 더불어 서독 외교력의 산물이었다. 서독은 동독총선을 통해 확인된 통일에 대한 민의를 민족자결을 원칙으로 천명한 전승4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하였으며, 다차원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전승4국과 관련 주변국들이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에 관해 합의하게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겼다.

서독의 통일외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진행을 적절히 제어된 구도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전승4국과 관련국가들의 이해를 「2+4」협상이란 틀로 수용하였다. ②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독지역으로의 NATO 확대를 반대함으로써 소련의 군사·안보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양면전략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③ 독일이 통일 이후 37만 병력을 상한선으로 하는 대폭적인 군사력 감축과 방어위주의 비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군사소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동독지역에 대한 외국군의 주둔을 금지할 것이며, 핵 및 생화학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다. ④ 「2+4」협상 및 쌍무회담의 과정에서 서독정부는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게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의 추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3. 동서독 군통합과정

가. 통일 이전 동서독간 군사·안보교류

통일 이전 서독내, 서독연방군 내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1민족 2국가론”과 동독의 “2민족 2국가론”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냉전이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통일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었다. 따라서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0년대 이후 통일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통일을 대비한 군통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

동서 양 진영이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을 추진하는 데탕트시기에 체결된 기본조약에 동서독은 군사분야 협력을 규정하였으나, 동서독 정부가 동서 양 진영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모색할 수는 없었다. 동서독간의 군사교류 문제는 양 진영간 군사·안보정책의 종속변수로서 취급되었고, 이념적 대립이 양 진영간에 존속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동서독이 독자적인 군사·안보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독간 군사·안보적 교류는 1987년 동독공산당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의 서독방문을 계기로 군축문제에 관한 전권위임자를 임명하여 양독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협상 시에 협상진행과는 별도로 서로간의 이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를 가지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상황의 급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동서독군 통합은 향후 통일 독일의 국방목표·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전략의 재정립 등 기본부터 새롭게 설정, 출발되어야만 하였다.

나. 국방정책의 재정립

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독일은 변화된 군사·안보적 환경을 파악한 바탕 위에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국방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재구성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군통합을 추진하였다. 유럽에서의 군사·안보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한 독일은 향후 국방정책의 근간을 ① 국내적,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 및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유엔 등 네가지 수준에서 국방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② 위 네가지 영역에서 독일이 정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력을 동반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두었다.

이러한 국방정책을 실천해나갈 통일연방군의 구조를 통일 이전 “제4군구조”에서 “제5군구조”로 개편하여 평화시에 군을 야전군과 향토방위군의 조직적인 혼성편제로 구성하였다. 한편 병역의무제와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중기적으로 12개월 기본복무기간의 일반병역의무제를 유지하되 만약 군병력의 감축이 더욱 요구되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지원군형태의 군복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 군통합 과정 및 기구

독일의 군통합은 크게 준비기, 동독인민군 인수기, 개편기, 정착기의 4단계로 추진되었다. 군통합의 준비기는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됨에 따라 서독 국방부가 군통합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한 1990년 6월부터 1990년

8월 17일 서독이 통일연방군의 구성 준비를 위해 동독의 군축·국방 부내에 서독 국방부의 동부파견소 형태인 「통합대비단」을 설치한 시기이다.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① 병력, 자재,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군하부구조, 통신망, 위생시설, 인민군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② 명령권과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 사전 대비, ③ 동독지역에 신설될 지휘조직의 구성과 숙영지에 관한 준비 등이었다.

동독인민군의 인수기는 1990년 8월 23일 서독 국방부가 통합대비단을 사령부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통일 이전까지 동독 군축·국방부에 대한 인수작업을 개시한 시기이다. 서독은 8월 25일 동독인민군의 해체와 인수작업을 책임질 독일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를 임시로 서독 국방부내에 설치하고, 서독 연방군의 인원을 동독에 파견하여 군통합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동독군의 감축과 동독 군축·국방부의 임무를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동독인민군 개편기는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져 서독 국방장관이 동독인민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시점부터 군통합의 1차 목표시한으로 설정한 1991년 3월까지 동독인민군의 개편작업이 추진된 시기이다. 국방부 동부파견소인 통합대비단의 임무를 종료시키고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를 공식적으로 설치하여 ① 명령권과 지휘권의 인수시점에 존재하던 육·해·공군 제 부대의 지휘, ② 추진중인 지휘조직의 분산 실현, ③ 미래의 병력구조에 부적합한 근무처와 단위부대 해체, ④ 동독군의 장비, 탄약 및 시설을 인수, 평가, 활용하거나 혹은 폐기처분할 때까지 관리, ⑤ 소련군의 철수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군통합의 정착기는 1차 동독인민군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동부지역사령부가 1991년 4월 1일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육·해·공군 각 군에 이양한 시점부터 새로운 연방군 건설을 위한 인적 개편과 물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구 서독지역출신 장병과 구 동독지역출신 장병들 간의 군내 인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동독지역에서의 인민군해체와 통일연방군에 입각한 군사지휘체계 및 부대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자 동부지역사령부는 1991년 6월 30일부로 해체되고 군통합의 후속 개편작업은 연방국방부와 각 해당부대 및 기관이 직접 관장하였다. 그 결과 1992년 6월 30일 동독인민군 간부에 대한 최종 선발·편입이 완료되었으며, 1994년 8월 31일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고, 1995년 5월에는 동독인민군의 마지막 전차가 파기되었다.

라. 병력감축

통일 이전 동독인민군은 1994년까지 전환기가 연장되어 그 기간에 통일독일에 두개의 독일군이 존재하는 방안을 기대하였으나, 서독정부는 동독인민군을 해체하고 연방군에 잔류를 원하는 인민군 병력을 임시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173,000명의 인민군 가운데 통일시점까지 잔류한 89,000여명의 병력중 통일연방군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50,000여명을 동부지역사령부에 예속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류·선발심사를 통한 연방군 편입작업을 실시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방군의 상비병력을 370,000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동독군의 편입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활동을 한 자, 동독의 국가안전부 1청에서 근무한 자,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 등은 즉각 전역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국방부는 잔류를 희망하는 동독인민군 출신자 가운데 개편후 활용 가능한 직위는 우선 인수, 불필요한 직위

는 선별 인수, 정치장교 및 심리전 요원 등은 즉각 전역 등의 선발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3년 9월 30일 최종선발을 통해 동독인민군 출신 가운데 장교 3,027명, 하사관 7,639명, 병 207명 등 총 10,873명이 통일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서독연방군 출신 장교들과의 균형을 위해 1~3계급씩 강등조치가 취해졌다.

마. 무기 및 장비 처리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는 크게 1990년 11월에 CSCE에서 합의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상의 “감축대상 장비”와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감축대상 장비의 경우 CFE 의정서에 명시된 파기 혹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고정 전시용 배치, 지상표적으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CFE의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처리에 따르는 비용·경제성을 고려하여 대내·외 판매나 군사원조 형태의 지원으로 처리하되 독일의 법률 및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였다. 특히 대외판매는 NATO의 승인하에 실시하였으며, NATO 비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경우에는 「연방안보회의」(Bundessicherheitsrat)가 심사하여 분쟁지역으로는 판매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원의 경우 독일은 NATO 동맹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군사적 현대화가 뒤진 터키와 그리스를 군사원조란 이름하에 잉여장비의 처리장소로 활용하였다. NATO 비회원국으로 대량의 동독인민군 장비를 수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핀란드였다.

동독군이 보유하였던 대다수의 무기체계를 폐기처리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약 30만톤의 탄약이 처리되어야만 하였다. 독일은 막대한 양의 탄약을 관리, 집결, 경계,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련 및 제3국에 약 9.8만톤을 인계하고, 약 500톤은 적법절차를 거쳐 대내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잔여량을 폐기처리하였다.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 경우 구 동독지역 소재 기업들을 참여시켜 재고용이 창출되도록 하였다.

바. 군수산업 및 군용지 처리

동독의 군수산업은 독일이 동독 국영기업체들의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탁청」(Treuhandanstalt)에 의해 민간부분으로 전환되었다. 군수산업의 민수용 산업으로의 전환(Conversion)에 대한 독일의 기본원칙, 그중에서도 CDU-CSU-FDP의 보수-자유 연합정부의 원칙은 전환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인들과 시장기구가 전환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즉 동독지역의 주들이 전환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재정적 취약으로 인해 동독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한편 연방군은 동독군과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병영, 훈련장과 같은 군용지 및 시설을 인수하였다. 국방부는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토지·시설 가운데 일부를 향후 동부지역 군구조를 고려하여 유지하였고, 그외 시설은 연방신탁청과 「연방재정국」(Bundesvermögensverwaltung)에 이관하였다.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군용지 및 시설은 소련군의 철수가 1994년에서야 완료됨으로 인해 연방군의 재배치시

점과 상충되어 연방군이 사용하지 못하고 일체를 신탁청과 지방정부에 인계하였다. 한편 분단의 상징이었던 국경장애물이 통일 이후 동서간 교류에 장애가 되자 독일정부는 구 동독군 국경수비대 요원을 투입하였고, 이들의 해체 후에는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1993년 12월 말까지 장애물 제거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사. 군내 인적 통합

군통합에 있어서 독일연방군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군내적 통합, 즉 동서독출신 장병간에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연방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인민군에 대한 재교육이었다. 교육 가운데 국민을 위압하던 인민군을 “제복입은 국가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정치교육에 가장 힘을 쏟았다. 장병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주적 국가의 가치와 더불어 국가기구 및 기능, 군의 국가보위 임무, 국가 및 사회에서의 군의 역할, NATO와 연방군과의 관계 등이 교육되었다.

동서독출신 장병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 독일이 추진한 또 다른 정책은 인민군출신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었다. 연방군으로 편입된 인민군들의 법적 지위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수도 단계적으로 구 서독군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방부는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mt)과의 업무협조로 전역군인들에게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청에 다수의 동독인민군 전역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실업문제의 해소에 다소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독일은 동독출신의 징병자 대부분을 서독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인적 통합의 계기로 삼았다.

아. 전승4국 군의 감축

소련군의 철수는 독일과 소련이 합의한 협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독일은 1990년 10월 9일 소련과 독일주둔 소련군 철수비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 10월 12일 소련군의 독일주둔 조건 및 철군방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군의 철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 한편 코카서스 회동에서 소련군의 철수비용을 부담하고 더불어 소련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했던 독일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퇴진과 엘친(Boris Yeltsin)의 등장, 그리고 혼미한 소련 내부정국에 불안을 느껴 1994년 말로 예정된 소련군의 철수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992년 12월 16일 독·소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소련군이 1994년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는 대신 소련군의 철수 후 정착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철수비용 부담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199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소련군의 철수는 1994년 8월 31일까지 3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은 약 131억 마르크의 비용을 지원하였다.

유럽에서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NATO의 전략도 수정되었다. 1991년 11월 7일 로마정상회담에서 NATO는 새로운 전략수정에 합의하여 ① 유연대응전략과 전방위개념의 폐지, ② 위협(Threat)의 개념을 위험요소(Risk)로 대체, ③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 하에서 기동성있는 방위전략을 통해 회원국의 안전 보장, ④ 기동력을 가진 강력한 소수정예 NATO군의 유지를 통한 위기 대처, ⑤ 핵전력을 정치적 차원에서의 수단으로만 사용, ⑥ 전면전 대비 위주의 전력 운용에서 평시·국지분쟁시·위기관리시·전시에 따라 융통성있는 대응

이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등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NATO전략의 변화에 따라 독일주둔 NATO군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1990년 총 402,900명에 달했던 독일주둔 NATO 군병력은 1994년 128,000명으로 조정되었다. NATO군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미군의 감축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잔여 독일주둔 미군의 병력, 육·해·공군별 구성형태, 군장비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이 내렸다.

4. 독일군통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이룩될 수 있었다. 그러한 연상선 상에서 군통합도 유혈충돌이 없이 평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군통합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군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독일군통합 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군통합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한관계는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협력이 형성되는, 통일 이전 동서독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적대적 협력”의 초입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류·협력에 따른 상호 이해의 증대에 따라 적대적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한이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군 건설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

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대적 협력에서 “평화공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적대적 협력이 진정한 평화공존, 나아가 군비통제와 군통합 논의로 진전되기에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대적 협력이 막 옴트기 시작한 한반도의 경우, 협력의 폭과 규모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다른 한편으로 국내·외적 수준에서, 남북한관계 및 다자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켜가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 구도내에서 적대적 협력의 심화가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어 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사례가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전승4국의 주요한 관심사항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합의도출 여부가 독일의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의 극복은 ‘법률상’ 남북한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4국이 분단의 극복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질 수 없다. 특히 통일 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주변4국의 묵시적·명시적 합의는 통일은 물론 남북한 군통합을 조건지우는 외부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남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이 전제될 때 주변4국의 통일에 대한 반대 명분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한주민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통일에의 의지를 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통일한국의 군사·안보문제, 특히 군사력 규모와 동맹체제가 주변4국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과정에서 통일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속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남북한은 상이한 이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독식의 양면전략은 물론, 나아가 다면 전략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병력·장비와 관련하여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이 통일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변4국의 공통적 이해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독일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우선 군사력의 기본 틀이 될 병력의 규모를 남북한은 통일 한국의 국방정책과 국내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규모를 설정한다. 이 경우 병력 및 장비는 통일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대폭적으로 감축된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①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동의하는데, ② 역내 재래식무기 감축을 추진하는데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통일한국군의 병력·장비규모는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통일의 협상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실제 병력·장비의 감축은 그것이 통일한국에 미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주변4국과의 협의를 통해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병력·장비의 상한선까지 신축성있게 감축하도록 한다. 군사력 감축으로 인해 처리되어야 할 잉여 군장비·무기의 해외이전 혹은 수출에 관해서도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재래식무기감

축협정」(가칭)의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독일의 군사력 감축과 CFE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사례를 동북아에 응용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통일한국의 안보동맹체제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남북한간에 평화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통일 당시 남북한이 미국 및 중국과 맺고 있는 동맹체제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동맹체제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중국과 동맹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통일한국이 어떠한 동맹체제에도 가담하지 않는 방안, 나아가 통일한국이 주변국들과 지역안보협력체제를 새로이 형성하여 다자안보동맹을 맺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러한 유형 가운데 주변4국의 이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안보동맹체제를 지속하는 방안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합의하고 중·러가 양해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독일의 NATO 잔류 전제조건이 보여주듯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에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형성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변4국과 군사·안보적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 이후 군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야가 동서독출신 장병간의 인적 통합이란 사실이 시사하듯이 남북한 군통합시에도 남북한출신 장병들 서로 간에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 직후에는 국군과 인민군 출신 장

병이, 통일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는 남북한출신 장병이 통일한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통일한국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 더불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군운영은 남북한출신 장병들간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 이후 통일한국군에 충원되는 남북한출신 장병들이 각각의 지역에 교차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병력이 대폭 감소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 양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병역의무제를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가 독일과 마찬가지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병역의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수하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場)이다. 병역의무제로 징병된 장병들은 군 내에서의 통합체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기타 사회부분에서의 통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회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병역의무제의 유지는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안보태세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다.

- 목 차 -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 2 |
| II.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군사·안보문제 | 4 |
| 1.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 | 4 |
| 가. 전승4국의 입장 | 5 |
| 나. 서독의 대응 | 12 |
| 2. 병력규모와 비핵화문제 | 19 |
| 가. 병력규모 결정 | 19 |
| 나. 통일독일의 비핵화 | 23 |
| III. 동서독 군통합과정 | 25 |
| 1. 통일 이전 동서독간 군사·안보 교류 | 25 |
| 2. 국방정책의 재정립 | 32 |
| 3. 군통합 과정 및 기구 | 41 |
| 4. 병력감축 | 48 |
| 5. 무기 및 장비 처리 | 56 |
| 6. 군수산업 및 군용지 처리 | 66 |
| 7. 군내 인적 통합 | 70 |

| | |
|-----------------------------|----|
| 8. 전승4국 군의 감축 | 75 |
| 가. 소련군의 철수 | 75 |
| 나. 연합군의 감축 | 77 |
| | |
| IV. 독일 군통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 | 82 |
| | |
| 참고문헌 | 93 |

- 도표목차 -

| | |
|---|----|
| <표 1> 통일 이전 동서독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 33 |
| <표 2> 연방군 인력구조 내용 | 38 |
| <표 3> 통일 전후 독일 국방정책의 특징 | 40 |
| <표 4> 서독 국방부내 군통합 책임부서 | 44 |
| <표 5> 동부지역사령부 편성 | 45 |
| <표 6> 통일 이전 동서독군과 주둔 외국군의 인원 및 편성 | 50 |
| <표 7> 연방군에 대한 동독인민군 편입과정 | 55 |
| <표 8> 통일 이전 동서독군의 주요 장비현황 | 57 |
| <표 9> 동독군 무기 및 장비 처리현황 | 59 |
| <표 10> 독일연방군 편입 인민군간부 대상 교육내역 | 72 |
| <표 11> 구 동독군 편입자의 구 서독군 대비 봉급 수준 | 73 |
| <표 12> 독일주둔 NATO군 감소추이 | 79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는 통일한국의 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군을 형성하기 위한 남북한 군통합은 통일시점의 제반 국내적 여건, 그리고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주변국의 입장이란 이중적 차원의 고려 속에서 수립되어질 통일한국의 국방목표에 입각한 국방정책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군통합은 복수국가 군대의 제반 기능 및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능 및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하나로 융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군의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군내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군통합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재수립, 지휘체계와 조직의 개편, 인력과 물자의 질적·양적 통합, 군수물자 생산체계의 정리 및 체계화 등이다.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조응하여 추진되어질 군통합은 군 내부의 독자적인 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종합적인 국가통합구상의 일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사회통합과정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통일한국군의 형성을 위해 남북한간의 군통합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국내·외 환경적 고려 속에 체계적,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2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 아래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무리없이 군통합을 추진하였던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리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독일의 분단과정이 우리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이, 특히 동서독의 군통합이 평화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사례는 분단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군통합에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북한 군통합을 준비하는 사례연구로서 동서독 군통합을 살펴보기 위한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과 통일의 관리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승4국은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둘째,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급전 속에서 독일은 통일 전후 동서독 군통합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 셋째, 통일 이후 독일연방군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어떻게 재정립하였는가? 넷째, 통일 이후 독일은 군의 내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독일의 군통합을 조건지웠던 외부적 틀의 정립과정과 서독의 대응, 독일의 실제적 군통합과정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좀 더 큰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진행된 이러한 통일의 과

정이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의 역사적 반복은 어느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사실 한반도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한반도의 균통합도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독일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던 독일의 균통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통일된 한반도의 군사력 규모 및 동맹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바람직한 균통합방안에 응용될 수 있는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장 적대적 집단인 군을 하나로 융화시켜 나가려는 균통합의 과정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균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은 통일대비역량을 키우려는 작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될 하나의 군을 건설하려는 균통합에 관한 논의가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나아가 환경적 측면과 연계하여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I.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군사·안보문제

1.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

1989년 동독에서 분출되었던 평화적 혁명의 진전과 동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 그에 따른 국민적 환희, 그리고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던 자유총선을 통해 신속한 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의지가 확고하게 표명되면서 독일통일은 국내적 힘에 의해 거의 달성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곧 통일에의 모든 사안이 전승4국은 물론 동서 양 진영 이웃국가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급전 속에서 전승4국의 상이한 입장을 극복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 서독의 외교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독일통일에 대한 유보권(Vorbehaltsrecht)을 가졌던 전승4국이 독일의 통일과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둘째, 서독은 어떠한 과정과 방안을 통해 전승4국의 입장을 수렴하면서 통일을 달성하고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군통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의미는 서독이 통일을 어떻게 쟁취하였는가에 한해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 큰 의미는 전자의 경우에는 독일의 군통합에 대한 외부적 틀을,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적 여건에 조응하여 서독이 어떻게 군통합의 방향을 설정하였는가를 파악해 보는데 있다.

가. 전승4국의 입장

독일의 통일과 통일독일의 군사문제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관되어 있었다. 1945년 6월 5일 연합국 공동성명서에 합의된 분할점령원칙과 1945년 8월 2일 포츠담협정에 의해 확정된 독일관리이사회 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영·불·소 등 전승4국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로 인해 유럽의 기존질서가 흔들리기를 바라지 않는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특히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구가하였던 1989년 당시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럽의 중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동서로 팽창하는 통일독일의 모습은 그들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환영(幻影)이었다. 군국주의적인 국가의 발전과정, 1·2차 세계대전과 국가사회주의자들을 체험한 그들로서는 프로이센-독일의 유령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간 국경이 개방되었을 당시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승4국의 공통적인 기본입장은 독일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통일문제는 현재의 정치적 사안, 즉 정치현안(政治懸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을 넘어서면서 동독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통일에의 염원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전변되고 있었다.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동독주민들의 데모합성이 1990년 1월말~2월초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로 바뀌어 동독전역에 메아리쳤다. 전승4국은 이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에 의한다고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 결과 급속한 통일에 대

한 동독주민의 요구가 밝혀지게 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민족자결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던 전승4국은 독일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독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통일은 받아들여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여기에는 전승4국,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1) 미국

아이젠하워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일찍이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수상에게 “미국과 소련간의 어떠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독일이 중립적, 독립적인 무력집단으로 미·소 세력권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진군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라고 고백하였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독일군에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민족자결에 의하여 통일에의 열망이 확인된 이상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전제조건은 첫째,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가입, 둘째, 현 독일국경선의 항구화였다. 1989년 12월 2~3일 말타에서 개최되었던 미·소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부시(George Bush) 미대통령은 12월 4일 개최되었던 NATO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으며²⁾, 1990년 2월 초에는 서독의 외무장관 겐셔(Hans-Dietrich

1) Ernst Nolte, *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München/Zürich, 1974), p. 688.

Genscher)에게 현 독일국경선의 고착을 요구하였다. 이어 1990년 2월 24~25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미·독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재차 상기 두 전제를 콜(Helmut Kohl) 수상에게 요구하였다. 통일을 위해,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위상의 확보를 위해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필요로 하였던 독일은 미국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2) 소련

한편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며칠 후인 11월 15일 모스크바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통일을 기본적으로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나, 통일은 정치현안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그는 콜 수상이 밝힌 통일 10개항 제의(1989년 11월 28일)³⁾에 대한 반응으로 인위적으로 추동되는 독일의 통일은 물론, 국가연합 형식의 통일조차 반대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원칙을 소련도 반대할 수 없었고, 1990년 2월 10일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를 방문하였을 때 소련은 독일인의 자결권에 동의하였다. 동독 총선거에 의해 동독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자 이제 소련은 통일독일의 군과 동맹체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소련은 통일독일의 NATO가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였다. 통일독일의 NATO가입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
- 2) 부시 대통령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통일독일이 NATO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에 잔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전승4국의 권한과 책임은 계속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유럽 안정구도를 해치지 않도록 독일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후 질서하에 형성된 국경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3) 10개항의 내용에 관하여는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서울: 팔복원, 1996), pp. 324~331 참조.

WTO, 세계무역기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 Warsaw Pact: WP로 표현)와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려 유럽에 새로운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통일된 독일은 어느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세력균형 유지란 변수 외에 국내적인 측면이 고려된 결과였다. 즉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의 대항세력이었던 소련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 통일독일의 NATO가입을 반대하였고, 통일독일의 NATO 가입에 대한 동의는 바로 자신에 대한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고르바초프는 우려하였다.⁴⁾

유럽대륙에서 군사·안보적 틀을 형성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강력한 군사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을 소외시키는 것은 곧 유럽의 평화유지에 엄청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서독정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NATO 가입을 기정사실화 한 서독은 소련을 움직이기 위해 서독의 정책이 동구권과 맺은 모든 조약과 1975년의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⁵⁾ 최종 합의서(Helsinki Final Act)⁶⁾를 존중하고,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인정

4) Michael Wolffsohn, "Der außenpolitischen Weg zur deutschen Einheit", Eckhard Jesse·Armin Mitter (eds.),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2), pp. 142~162 참조.

5)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개칭되었다.

6)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다자안보협력의 원칙으로 「참가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제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을 통해 제1원칙: 주권의 평등과 주권에 고유한 제원칙의 존중, 제2원칙: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억제, 제3원칙: 국경의 불가침성, 제4원칙: 국가의 영토보전, 제5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6원칙: 내정불간섭, 제7원칙: 인권 및 사상·양심·종교·신조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의 존중, 제8원칙: 제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 제9원칙: 국가간의 노력, 제10원칙: 국제법에 규정된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10개

하는 기반 위에, 즉 현상유지에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소련을 움직이지는 못하였다.⁷⁾

(3) 영국

전승4국 가운데 독일통일의 가능성에 관해 가장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동독에서 평화적 혁명의 진전에 대한 영국의 첫 반응에는 불만이 뚜렷이 배어 있었다. “제4독일제국”의 부상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통일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 이에 따른 대영제국의 쇠퇴감에 대한 우려가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대외적으로 독일문제는 독일 전주민의 자결권행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꾸준히 표명하였다. 따라서 동독 총선에서 신속한 통일에의 의지가 확인되자 영국의 반대는 명분을 상실하였다. 마침내 1990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정책은 「2+4」협상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영국은 하나로 통합된 유럽에 통일독일이 묶여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0~1991」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pp. 786~790 참조.

7) Ulrich Albrecht, *Die Abwicklung der DDR: Die "2+4 - Verhandlungen". Ein Insider-Bericht* (Opladen, 1992) 참조.

8) 콜과 쟈서가 1990년 2월 10일 고르바초프를 방문하여 독일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자결권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냈을 때 소련정부 대변인 게라시모프(Gennadi Gerassimow)가 최초로 독일통일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2+4」형식의 회담을 언급하였다. 「2+4」협상은 2월 13일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던 동서독과 전승4국 등 6개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독일통일의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틀로 합의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동서독 2국과 전승4국의 외무장관들은 5월~9월간 4차에 걸쳐 「2+4」협상을 개최하였다. 「2+4」협상 과정에 관하여는 *Europa-Archiv*, Folge 19(1990), D 491~D 508; *Frankfurter Rundschau*, 1990.9.13; Ulrich Albrecht, *Die Abwicklung der DDR: Die "2+4 - Verhandlungen". Ein Insider-Bericht* 참조.

영국에게 있어서 독일통일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당시 동독과 폴란드간 국경인 오데르(Oder)-나이쎄(Neiße) 선의 항구화에 대한 독일의 최종적인 인정과 통일독일의 NATO 잔류였다. 또한 NATO군이 동독지역에 주둔하지 않는 것을 양해하고, 소련군은 완전철군까지의 과도기간중 동독지역에 주둔할 수 있으며, 서독주둔 영국군의 경우 감군은 이루어지나 독일에 계속 주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당시 동서독 국경인 엘베강(Elbe)지역까지 한정되었던 미국의 핵보장이 오데르-나이쎄 강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영토적으로 확장되고, 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통일독일의 군사력에 의해 위협받거나, 최소한 변화될 수 있는 유럽의 세력균형에 대한 보장을 미국과 소련이 향후에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다.⁹⁾

(4) 프랑스

프랑스가 독일의 통일, 특히 신속한 통일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리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초기 기대는 최대한 동서독이 공존하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독일연방이 형성되도록 독일에서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수정되어 신속한 독일통일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결정에는 1990년 2월 동서독이 경제 및 화폐를 통합하기로 천명하고, 동년 3월 동독 자유총선에서 신속한 통일을 주장한 서독 기민당(CDU)의 자매정당인 동독

9) *Der Spiegel*, 13(1990), pp. 182~187.

CDU가 승리하였으며, 콜이 고르바초프를 방문하였을 때 독일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양해가 양국간에 이루어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서독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독일-폴란드간의 항구적인 국경으로 인정하고, 소련이 통일독일의 NATO 가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유보적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결국 프랑스는 「2+4」협상에 참가하여 독일의 통일을 승인하는 대신 구체적인 군사·안보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프랑스 정치권 내에서는 향후 대독정책의 기초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민족자주적 모델, 둘째, 영국과의 “화친협상”(Entente cordiale)을 부활하고 미국 및 폴란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델, 셋째, 지중해 연안국들과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는 모델, 넷째, 195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독일을 유럽질서 내에 묶는 모델 등이었다.

독일통일 이후 1990년 12월 진행되었던 EC¹⁰⁾ 정상회의에서부터 프랑스가 독일과 더불어 유럽통합의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프랑스의 정치권이 국가연합과 연방체제를 염두에 둔 실용적인 유럽통합안을 독일과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즉 비록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마지막 모델에 입각하여 대독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통합의 실현을 추진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독일을 국제적 틀에 묶어두고자 하였다.¹¹⁾

10) EC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체결됨에 따라 EU로 개칭되었고, 1993년 1월 1일부터 회원국간 단일 시장이 그리고 1999년 1월 1일부터 단일통화 Euro가 각각 출범하였다.

나. 서독의 대응

통일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서독정부가 경주한 외교적 노력은 이러한 관련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동독에서의 총선을 통해 신속한 통일에 대한 합의가 대내·외적으로 형성되자 서독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독일의 군사·안보문제에 관한 합의가 전승4국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또한 서독정부는 독일통일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승4국 어느 국가에게도 불리하게 개편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승4국이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1990년초 신속한 통일에의 의지를 내부적으로 다질 즈음 서독 정치권 내에서 이루어진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논의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일독일이 NA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되, 구 동독지역인 엘베강 동쪽지역에 NATO군이 주둔하지 않는 방안, 둘째, 통일독일이 NATO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물론 동독 지역에도 NATO군이 주둔하는 방안, 셋째, NATO와 WP의 양 군사 동맹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CSCE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에 실제적인 군축조치를 포함하는 하나의 새로운 전유럽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방안이었다.

겐서 외무장관은 첫번째 방안에 찬성하면서 양면전략을 구사하였다.¹²⁾ 그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통일독일이 NATO회원국이 됨

11) Andreas Meusch, "Frankreich und die deutsche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s.),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pp. 328~329.

12) 자민당(FDP)의 겐서에 반해 당시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던 CDU와 기사당(CSU) 연합의 연방의회 원내총무이었던 드레거(Alfred Dregger)는 두번째

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부유럽으로 NATO 영역의 확충을 반대함으로써 소련의 군사·안보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겐서는 이를 1990년 2월 1일 투칭에서 열린 기독교 아카데미 회의에서 통일독일은 NATO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나 동독지역으로 NATO영역의 확충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sowohl als auch”(A and B) 정책 - 소위 “겐서의 투칭계획” - 으로 제시하였다. 통일독일은 NATO에 가입하되 동독지역에 NATO군 소속 서독군외 NATO군의 주둔과 작전권행사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서독은 통일독일 전체가 NATO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기 원칙 하에서 동독내 외국군주둔 금지에 따라 소련군이 철수할 것이며, 통일독일이 NATO의 중심국으로 확고하게 남을 것이고, 독일통일을 유럽통합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소련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독은 1990년 5월 4~5일 본에서 개최된 제1차 「2+4」협상에서 통일독일이 NATO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세바르드나제(Eduard Schewardnadse) 소련 외무장관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다만 이 회담에서는 국경문제, 유럽의 정치·군사·안보문제, 베를린 문제, 전승4국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국제적 합의와 소멸 문제가 향후 「2+4」협상의 의제로 합의되었다. 1차 회담에서 통일독일의 동맹체제에 관한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6월 6~7일 CSCE 인권회의(코펜하겐)에서 겐서, 베이커,

방안이 “비록 통일된 독일이라 할지라도 세계 초강대국인 소련에 비하면 군사지정학적으로 단지 하나의 난장이에 불과하다는 사정으로 인해 소련에 의해 납득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독지역으로의 NATO 확대를 지지하였다. *Esslinger Zeitung*, 1990.2.2. 한편 벤더(Peter Bender)의 글에서는 세번째 사고를 뚜렷이 엿볼 수 있다. *Die Zeit*, 1990.2.9.

세바르드나제는 회합을 갖고 소련이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용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2+4」협상은 6월 22일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세바르드나제는 통일독일의 동맹체제와는 별개로 독일이 통일후 5년 이내에 전승4국 주둔군의 50%를 감축하고, 통일독일의 병력수를 25만명 이하의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콜 서독수상은 독일군의 감축계획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병력규모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더불어 군복무기간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것을 밝히면서 소련의 요구에 더욱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 회담에서도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련은 통일독일군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서독이 요구하는 통일독일의 NATO잔류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두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서독의 제안을 받아들여 통일독일의 NATO가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보수세력의 명분을 없앨 수 있는, 유럽의 세력불균형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보장을 요구하였다. 둘째, 고르바초프는 통일독일의 NATO가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독과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지원 등의 양보를 최대한 받아내고자 하였다. 소련이 통일독일의 중립화 방안에서 후퇴하여 조건부 NATO 가입을 받아들이고자 한 이면에는 독일의 중립화도 유럽의 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는 고려가 내포되어 있었다. 중립화된다고 해서 통일독일과 서방간의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서독과 NATO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소련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1990년 7월 5~6일 런던의 NATO정상회담에서 취해졌다. 1990년 7월 2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제 28차 소

런공산당대회가 열려 내부적으로 새로운 유럽에 관한 심각한 논쟁이 진행중이던 시점에 열린 NATO 16개국 정상회담에서 “NATO가 소련을 더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평화선언이 채택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서방은 군사적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이 공표되었다.¹³⁾

런던성명을 통해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결체제의 종식을 이끌어낸 노력과 더불어 독일은 소련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우선 6월 25~26일 EC정상회담(더블린)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에 재정·경제원조를 약속하고, EC위원회에 소련측과 단기차관 및 장기원조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위임하며, CSCE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¹⁴⁾ 또한 콜 수상은 향후 12년동안 조건 없이 30억달러(당시 환율로 50억마르크)의 차관제공을 결정하였으며,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함께 150억달러의 대소지원을 서방세계에 촉구하였다. 또한 휴스턴에서 1990년 7월 9일 개최되었던 서방선진국정상(G7)회담에서 서

13) 동 회담에서는 냉전종식에 관한 23개항이 발표되었다. “냉전시기 우리의 적 이었던 동유럽국가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NATO와 동유럽 국가간 외교관계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1989년 12월 초 미·소정상이 말타에서 합의하였던 ‘냉전종식선언’을 NATO가 승인한 것이다. 런던성명에는 군사전략적인 제안도 포함되었다. 연내에 군비감축협상을 끝내고 CSCE를 상설기구화해서 활성화하며 유럽배치 핵폭탄을 전면 철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NATO의 정치적 측면의 제고였다. 동서독 접경의 전투력 전진배치를 분산배치로 바꾸며, 신축성있는 핵 대응전략인 유연대용전략을 포기하고 핵을 마지막 수단으로 못박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체제변화는 WP의 와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군사동맹으로서 NATO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려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이었다. 서방측은 무엇보다도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못박고, 동시에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손상을 주지않으면서 가능하다면 보수파와의 대결에서 고르바초프가 안정된 지지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랐다. *Die Welt*, 1990.7.7.

14) Emil Hübner-Horst-Hennek Rohlfs,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92* (München, 1991), p. 413.

독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를 주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각국의 개별적인 대소경협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소 경제지원 원칙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 소련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이끌어낸 서독은 1990년 7월 15~16일 콜과 고르바초프의 역사적인 코카서스 회동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져 결국 합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은 통일후 방어위주의 비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병력 37만 명의 “군사소국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동독지역의 외국인군 주둔은 물론 서방측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의 배치를 반대하고, 셋째, 동독주둔 소련군은 1994년까지 철군하되 철수에 소요되는 전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다.¹⁵⁾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통일독일은 주권을 완전 회복하며, 연방에의 귀속결정과 군사기구에의 가입결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소련으로부터 약속받았다.

이로서 통일독일의 NATO가입과 군사력 감축을 전제로 한 독일의 통일이 동·서 양 진영에 의해 추진되었다. 통일독일의 NATO가입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은 물론, 소련에 의해서도 합의된 것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독일을 둘러싼 모든 국가는 NATO나 WP와의 조약상의 의무 때문에 그 군사력의 규모나 배치에 있어서 상호간에 규제를 받고 있다. 통일독일이 NATO를 벗어나면 그들이 군사력에 관해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독일이 조약상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군사력의 규모나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그 주변국가가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에는 새로운 불안이 닥쳐올 수 있다. 따라서 통일독일을 중립화하기

15) *Europa-Archiv*, Folge 18(1990), D 488~D 490 참조.

위해 어떠한 안전보장기구의 골레도 쓰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유일한 안전판이 통일독일을 NATO에 묶어두는 것이며, 여기에 유관국 모두가 동의하였던 것이다.

콜과 고르바초프는 코카서스 합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쌍무협정에서 조정하고 포괄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독일과 소련과의 향후 관계를 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독일의 동맹체제 및 군축문제가 서독과 소련간에 타협되자 제3차 「2+4」협상(7월 7일, 파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래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던 폴란드 서부국경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폴란드의 스쿠비스체브스키(Krzysztof Skubiszewski) 외무장관도 참석하였던 이 회담에서는 폴란드와 통일독일간 국경선의 최종적인 획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베이커는 통일독일이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고, 겐서는 독일이 주권을 회복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 서부국경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독-폴국경조약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¹⁶⁾

독일통일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독은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겐서는 통일독일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8월 22일 핵무기금지에 관한 제네바 회담에서 통일독일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기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코카서스 합의에 따라 9월 6일 통일독일과 소련의 향후 관계를 규정하는 경제조약, 원조조약, 소련군 주둔 및 철수에 관한 조약 등을 소련과 체결하였다. 이어 9월 11일 서독정부는 동독 주둔 소련군 철군에 부수되는 수송, 재교육, 소련내 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1994년까지 총 76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겐서는 모스

16) 독일-폴란드간 국경 확인 조약은 1990년 11월 14일 체결되었다.

크바에서 경제, 군사, 기술제공 문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련측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협상과정을 통해 서독은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협상에서 「독일에 대한 최종적 규정에 관한 협정」(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소위 「2+4」협정을 이끌어 내었다.

협정은 전문과 본문 10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었다.¹⁷⁾ 전문에서는 독일통일과 더불어 전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전승4국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에 의한 통일독일의 영토구성, 국제조약에 의한 통일독일과 폴란드의 국경확정, 통일독일의 침략전 포기, 핵과 생화학 무기의 생산·보유·사용 포기, 3~4년 내에 37만명으로 군병력 감축, 1994년 말까지 수행될 동독지역 및 베를린 주둔 소련군의 철수문제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동독지역 및 베를린으로부터 소련군의 완전 철수시까지 독일군이외 타국 군의 주둔이나 군사활동 금지, 소련군의 철수 이후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독일군의 동독주둔, 통일독일의 군사동맹체 가담, 전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전승4국의 권리와 책임 및 이와 관련된 전승4국의 합의와 결정의 종료 등이 규정되었다. 전승4국이 협정을 통하여 독일통일을 인정하고 독일인에게 완전한 주권을 되돌려줌으로써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선포한 독일은 완전한 민족자결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알타체제가 종식되었다.¹⁸⁾

17)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pp. 83~91; *Europa-Archiv*, Folge 19(1990), D 509~D 514 참조.

18) 손기웅, “독일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전승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일연구논총』, 5권 1호(1996), pp. 289~316 참조.

2. 병력규모와 비핵화문제

가. 병력규모 결정

통일독일의 군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1989년 당시 약 50만명의 서독군과 약 17만 5천명에 이르렀던 동독군을 한시적 시간 내에 37만명으로 감축·통합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어떻게 이끌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병력의 규모에 따라 무기, 장비, 군조직 등은 물론 군의 임무·역할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군사력 규모에 관한 결정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였다. 독일의 이웃국가, 특히 동부유럽의 이웃국가들은 독일에 의해 비롯된 비극적인 역사적 체험을 이유로 독일의 군사력이 급격히 감축되어 다시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군대였던 제국군(Reichswehr)의 병력 상한선이 10만명이었다는 사실을 독일과 국제사회에 거듭 상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였던 협상테이블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단지 폴란드만이 독-폴 국경선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제3차 「2+4」협상에 한차례 참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통일과정에서 통일독일군의 역할과 규모에 관하여 구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발언권을 행사하였던 국가는 소련 뿐이었다.

통일독일군의 병력문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은 겐셔였다. 제1차 「2+4」협상에서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해 이견이 노출되자 겐셔는 통일독일의 군이 대폭적으로 감축된 바탕위

에 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독이 신속하게 제안하는 것이 통일독일의 군, 나아가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1990년 5월 28일 겐서는 통일독일군의 병력이 35만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콜이 받아 들이도록 설득하였다. 이러한 규모를 제안한 배경에는 소련군이 우랄산맥 이서지역에 38만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할 예정이어서 독일연방군은 그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하였다.¹⁹⁾ 한편 겐서는 미국무장관 베이커에게도 이러한 의중을 전달하였으나, 베이커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 미국은 겐서의 제안을 소련과의 협상과정에서 최종적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²⁰⁾

한편 서독 국방장관 쉬톨텐베르크(Gerhard Stoltenberg)는 당분간 현 수준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되 최종적인 병력규모는 향후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만약 독일군의 감축이 통일 이전에 전제되어야만 한다면 현재의 병력 보다 조금 적은 수의 감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43만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였다. 국방장관이 이 수준의 병력규모를 제시한 배경에는 이 정도의 병력이 유지되어야만 당시 서독이 채택하고 있던 일반병역의무제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하로 병력규모가 감축될 경우에는 군복무제를 자율적인 지원제로 개편하려는 국내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게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겐서는 미·소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병

19)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117.

20)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ss./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274.

력규모에 관한 독일의 조속한 양해만이 서방측이 얼마나 소련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²¹⁾ 콜은 이 문제를 부시와 논의하였다. 미국은 서독이 병력을 감축한다는 양해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은 평가하나, 미국이 서독과 향후 병력규모에 관해 먼저 합의하기 이전에 서독이 소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서독이 약속해주기를 원하였고 콜은 여기에 동의하였다.²²⁾

한편 1990년 3월 동독 최초로 실시된 자유총선거에 의해 다수의 반체제인사가 포함되어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정부는 향후 독일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 선거 당시 서독 사민당(SPD)의 지원으로 동독지역에서 부활된 동독 SPD의 과도 당수이자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메켈(Markus Meckel)은 개인적으로는 약 20만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내각과의 협의 속에 통일 이후 연방군의 병력규모로 약 30만명이 적절하다고 합의를 보았다.

반면 소련은 통일독일군의 병력규모가 냉전시기 서독연방군 전력의 1/2 정도 혹은 20~25만명 선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2+4」협상에서 셰바르드나제는 독일군은 양적인 측면에서 총병력 20~25만명을 상한선으로 하여 감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감축되어 구조적으로 개조됨으로써 다시는 침략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련과의 회담이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서독 내에서는 마침내 겐서의 제안이 합의되었다. 코카서스 담판을

21) Horst Teltschik,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1991), pp. 249~251 참조.

22)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p. 275.

앞둔 1990년 7월 초 국방장관 쉬틀텐베르크가 콜 수상에게 병력규모가 40만명 이하로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여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겐서는 35만명을, 콜과 쉬틀텐베르크는 40만명을 각각 선호하였다. 콜은 35만명을 제안할 경우 쌍방간 협상과정에서 타협안으로써 독일측으로는 너무 적은 규모인 28만명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였다. 겐서는 콜의 고문인 텔칙(Horst Teltschick)을 통해 병력규모에 관한 독일의 입장은 협상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제안에 대해 더 이상의 양해가 이루어질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면서 콜을 설득하도록 하였다. 텔칙과 재차 협의한 콜은 37만명의 제안에 동의하고, 만약 모든 다른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면 최하 35만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²³⁾ 이에 따라 서독은 7월 15~16일 코카서스 회담에서 37만명으로 소련과 확정할 수 있었다.

이때 서독은 사전에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통일독일이 NATO의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고르바초프에게 병력감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달하였고, 결국 서독은 통일독일의 NATO 잔류와 통일독일군의 병력감축이란 미국과 소련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으로 통일의 마지막 장애를 무너뜨렸다. 한편 이 회담에서 세바르트나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35만명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아마 겐서로부터 어떠한 언질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²⁴⁾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거쳐 합의로 도출된 37만명이란 병력규모는

23)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p. 319.

24) 이러한 판단은 특히 미국측의 견해이다.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pp. 333~340 참조.

통일 직후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통일독일은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이유로 병력을 34만명으로 감축하였기 때문이다.²⁵⁾

병력규모와 관련하여 전승4국에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독일에 대한 이러한 병력감축을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방법상의 문제였다. 즉 향후 독일군의 규모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떻게 독일측에 전달하는가란 문제였다. 어느 국가도 자국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독일측에 부과한다는 인상을 받기를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동서독 양국이 CFE를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향후 병력규모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관해 「2+4」회담이 통고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동서독 외무장관들은 빈에서 개최된 CFE회의에서 통일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이 3~4년내에 군병력 규모를 37만명으로 감축할 것이란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NATO 정상들은 “CFE의 서명시에 통일독일의 군사력규모에 관한 합의(commitment)가 규정될 것”이란 합의문을 채택하였다.²⁶⁾

나. 통일독일의 비핵화

「2+4」협상과정에서 통일독일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역시 큰 의미를 가진다. 서독의 비핵화에 대한 재확인인 소련이 통일독일의 군사·

25) 1995년 3월 15일 독일 국방장관은 매년 격감되는 국방비(1991년 536.05억 마르크에 달했던 국방비는 1995년 475억 마르크로 감소)로 적정수준의 투자비를 유지하기에는 운영비의 추가적인 삭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력 3만명의 추가 감축, 군복무기간 2개월 단축(12개월에서 10개월로), 동원병력을 53만명에서 34만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242~245 참조.

26) “London Declaration on a Transformed North Atlantic Alliance” (London, 6 July 1990).

안보적 위상에 동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은 1954년 아데나워 수상(Konrad Adenauer)이 「서부유럽연합」(Western European Union: WEU) 합의의 부속서에서 핵무기를 생산은 물론 획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또한 NPT의 서명당사국으로서 비핵국가로 남는다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승4국이 「2+4」협상의 최종합의문에 독일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자 당황하였다. 그러나 WEU협정이 1998년에 부속서와 함께 그 효력이 만기가 되고, 협정의 연장여부가 불투명한 당시의 상황에서 독일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 독일은 핵무기에 관한 자국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재빨리 밝혔다.

이 재확인은 미국이 소련이 독일통일에 동의하고 통일독일이 NATO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활용하였던 여러 제안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1990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를 독일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언급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통일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자 한 것이다: “NATO는 독일인에게는 자국의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 이웃들에게는 독일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자신의 핵무기를 가지려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 독일에 대한 안정자적 역량이 될 것이다.”²⁷⁾

「2+4」협상 최종합의문에는 통일독일이 핵, 생물 혹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특히 향후에도 NPT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밝힌 제3조를 포함하게 되었다.²⁸⁾

27)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p. 276.

Ⅲ. 동서독 균통합과정

1. 통일 이전 동서독간 군사·안보 교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공산주의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전이 발발하고 소련의 팽창정책이 노골화되자 NATO 국가들은 1954년 10월 23일 서독의 NATO 가입과 재무장을 결정하는 「파리조약」을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 연방의회가 1955년 5월 5일 동 조약을 비준하고 5월 9일에는 NATO 가입을 결정함으로써 서독연방군(Bundeswehr)이 창설되었다. 한편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서유럽의 NATO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련의 주도하에 1955년 5월 14일 WP를 창설하였으며, 1956년 1월 27일에는 동독의 WP 가입을 결정하여 동독에도 동독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NVA)이 창설되었다. 이로써 동서독은 국경을 따라 첨예하게 대치하는 동서 냉전의 핵심전장이 되었다.

통일 이전 서독내, 서독연방군 내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1민족 2국가론”과 동독의 “2민족 2국가론”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통일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었다. 따라서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0년대 이후 독일 통일이란 주제는 거의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통일 이후 균통합을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역시 소홀히

2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p. 86.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독은 통일을 기본적으로 원치 않았고 독자적으로 통일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어 동독내, 동독인민군 내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역시 군통합에 대한 준비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통일이 가시화되고 그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군통합은 사회 어느 분야의 통합보다 힘겨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군통합에 대한 준비를 동서독이 예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반면에 양 독일은 제한적이거나 군사·안보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협력을 시도하였다. 분단 이후 서독정부, 특히 보수당인 CDU-CSU 연합정부 집권시 서독정부는 동독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내독관계 추진에 군사·안보분야 협력문제를 추가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예상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소련의 대유럽 안보정책의 목표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을 완전히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일을 중립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아데나워 이후 서독은 서구편입과 NATO 가입을 통한 대공산권 억지력 확보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고, 동독과 군축·평화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은 동독이 소련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소련의 대유럽 정책에 따라 군축과 평화선전공세를 펴는 동독이 서독과 합의가능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협의할 재량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모색과 핵, 화학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문제가 미·소를 중심으로 NATO와 WP 진영간에 유럽안보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논의되었으므로, 동서 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했던 동서독은 이러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는 하였지만, 독자적으로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관계를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도 서독을 제약한 요인이 되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미·소 양 진영은 자기 체제의 가치 및 질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다른 한편으로 핵전쟁시대의 인류절멸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데탕트시대를 개막하였다. 데탕트시대의 특징은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적대적 협력의 사고는 동서 양 진영이 상호간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측의 도움이 없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따라서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호간의 외적 협력관계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체제 내적으로는 강화된 조치를 통해 체제공고화를 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동·서 양 진영간의 이념적 적대관계는 지속하게 된다. 이념적 대립을 지속하는 한편 한 진영은 자기 체제의 유지적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만 상대 진영과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탕트시기의 화해·협력 정책은 동서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협력”과 “체제공고화” 사이의 “혼합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동·서유럽간 해빙기에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군사적 분야에서는 이념적 대립을 바탕으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군비경쟁은 가속되었다.

동서 갈등구조의 침범의 위치에 놓였던 동서독 역시 이러한 협력과 체제공고화란 적대적 협력관계를 데탕트시기에 형성할 수 있었고,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로 상호간에 선별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 군사분야와 관련하여 기본조약 제5조는 “동서독은 유럽에서의 안보와 협력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유럽내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적인 통제하에

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목표로 하되 특히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 있어서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후속협정의 체결을 통해 동서독간 교류·협력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으나, 군사분야에서만은 동서독 정부가 동서양 진영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모색할 수는 없었다. 동서독간의 군사교류 문제는 양 진영간 군사·안보정책의 종속변수로서 취급되었고, 이념적 대립이 양 진영간에 존속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동서독이 독자적인 군사·안보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소련이 중거리 핵무기 SS-20을 유럽에 배치하고 이에 대응하여 NATO 국가들이 이른바 군사적 균형을 이유로 퍼싱-II와 크루즈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결정하자 유럽에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폴란드에 연대노조가 성립되고 여기에 대한 소련군의 개입위협이 증가하면서 증폭되어 나타났다. NATO의 핵무기 배치에 대해 소련의 입장을 옹호한 동독은 서독측에 대해 이러한 핵무기 증강결정에 동참하지 말것과, 동맹국들간의 안보문제로 인해 기존의 동서독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관계의 지속문제를 안보문제와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독은 만약 유럽에 핵무기가 증강 배치될 경우 양독간에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내독관계를 서독 안보동맹관계 설정의 근본적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향후 양독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동독측의 선전적 평화공세를 차단하였다. 서독의 입장으로는 내독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화해·협력을 위해 안보면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동독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양 독일간 우호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한편이 다른 한편의 동맹관계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양독간 교류·협력의 한계이자, 당시 국제정치적 현실에 부응하는 방법이었다.

동서독은 양 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국가였던 만큼 양 독일의 영토는 미·소간의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특히 1984년 NATO의 유럽내 핵무기 배치가 끝나자 언제 발생하게 될 지 모를 핵전쟁의 최전방에 서게된 서독내에서는 기존의 동맹관계나 안보이론에 입각한 군비증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내에서는 평화운동(Friedensbewegung)그룹과 애국적 좌파(Patriotische Linke)그룹을 중심으로 반핵운동이 일어나고 기존 동맹관계를 안보중속관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제도정치권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존 대중정당, 특히 SPD를 중심으로 군사분야에서 양독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SPD는 “공동안보”(gemeinsame Sicherheit)²⁹⁾를, 녹색당 및 평화운동그룹은 “사회적 방위”(soziale Verteidigung)와 같은 대안적 안보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 CDU-CSU는 기존 NATO의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동독과 다자간 안보협력틀 내에서만 협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독일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독정부가 서독이 안보정책적으로 독자노선을 걸어서는 안되며,

29) 공동안보의 이론적 논거에 관하여는 Egon Bahr·Dieter S. Lutz (eds.), *Gemeinsame Sicherheit. Idee und Konzept, Bd. I: Zu den Ausgangsüberlegungen, Grundlagen und Strukturmerkmalen Gemeinsamer Sicherheit* (Baden-Baden, 1986); Egon Bahr·Dieter S. Lutz (eds.), *Gemeinsame Sicherheit. Dimensionen und Disziplinen, Bd. II: Zu rechtlichen, ökonomischen, psychologischen und militärischen Aspekten Gemeinsamer Sicherheit* (Baden-Baden, 1987) 참조.

기존 양독간 인적·물적 교류가 새로운 안보협력관계 논의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독은 양독의 기존 안보동맹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독간 군사교류를 모색하였다.

동서독 정부간 군사분야 교류·협력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1987년 9월 동독공산당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가 서독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였다. 양독 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독일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되며 이 곳에서부터 평화가 싹터야 한다고 하면서, 양 독일이 군사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각자의 동맹국가 간 안보협력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조치로 양측은 군축문제에 관한 전권위임자를 임명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전권위임자들은 제네바 군축협상, 빈의 재래식 전력 감축협상 등과 같이 양독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협상 시에 협상 진행과는 별도로 서로간의 이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독과 구체적으로 군사교류·협력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서독정부가 아닌 야당이었던 SPD였다. 데탕트 시기를 거쳐 1983년 이래 야당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SPD는 동구권의 공산당, 특히 동독공산당 SED와 유럽내 평화질서의 창조를 위해 새로운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협상을 벌이고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서독 보수당이 대 동구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안보분야에서의 동서간 협력 가능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정부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구속력이 없는 선언차원에 머물렀다.

SPD와 SED가 합의하였거나 협상을 벌였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화학무기지대에 관한 것으로 양측은 1985년 7월 21일 서독과 동독 및 체코를 포괄하는 지대에서 화학무기를 철수하고 생산을 금

지하며, 타국으로부터 반입을 금지하는 비화학무기지대 설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둘째, 비핵지대에 관한 것으로 1986년 10월 21일 양측은 중부유럽, 즉 서독과 동독 및 체코의 국경을 중심으로 양쪽 150km씩 300km 넓이의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의 폐기, 핵무기의 현대화 및 반입금지 등을 실천하는 비핵회랑(Atomwaffenfreier Korridor) 건설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셋째, 이념논쟁과 공동안보에 관한 것으로 1987년 8월 27일 양측은 서로 다른 체제의 정당간에 이념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핵무기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동서 진영간의 유일한 투쟁방법은 평화적 체제경쟁이며, 평화공존과 공동안보라는 발상은 상호대립과 세계적 패권 및 우위추구의 노력과는 배치된다는데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넷째, 방어지대(Defensive Zonen) 설정 및 재래식 무기 감축에 관한 것으로 선제기습공격을 한쪽이 감행할 수 없도록 중부유럽에 방어지대를 설정하여 그 지역에 배치된 공격용무기를 완전히 철수하던가 혹은 일정한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은 1985년부터 미국과 군축협상을 재개하였고, 주요 감축대상은 양 독일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집중 배치된 무기들이었다. 따라서 미·소의 합의내용은 동서독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것이었으므로 양 독일은 진영간의 군축협상에 그들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동서독 양 지역이 사정거리의 중심이 되는 중거리핵무기의 철수와 화학무기의 폐기 등 미·소간 대량살상무기 감축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87년 12월 8일 미·소는 유럽내 지상발사 중거리 핵무기의 완전철폐, 이른바 「중거리 핵무기 감축협정」(Treaty on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INF)을 체결하였다.³⁰⁾

결국 서독은 독일분단의 국제적 성격, 냉전의 지속 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통일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통일을 대비한 군통합의 노력,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란 측면에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동독과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상황의 급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동서독군 통합은 따라서 향후 통일독일의 국방목표·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전략의 재정립 등 기본부터 새롭게 설정, 출발되어야만 하였다.

2. 국방정책의 재정립

동서독은 미·소를 정점으로 대립하였던 냉전의 시기에 각 블록 군사기구의 중심국이었다. 서독은 미국을 주축으로 1950년 12월 발족된 NATO의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동독은 소련을 중심으로 동구 공산 국가들이 1955년 5월 창설한 WP의 가맹국으로서 참여하게 대립하였던 냉전의 전초기지였다. 따라서 동서독의 국방정책과 그것에 준한 군사전략은 각기 속하였던 군사기구의 구도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독의 경우 NATO와 WEU라는 다국간 군사동맹에 의거한 연대방위를 국방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NATO의 유연대응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동독은 WP에 의한 집단군사안보체제를 지주로

30) Reimond Seidelmann, "Deutsch - deutsche Rüstungskontrollpolitik?", *Deutschland-Archiv*, 5(1984), pp. 480~487; Wilhelm Bruns, "Zur sicherheitspolitischen Roll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chiv*, 2(1988), pp. 174~176; Wolfgang Voigt, *Streitfall Frieden* (Heidelberg, 1984); 주독대사관, 「동서독간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22,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3.9) 참조.

삼아 소련군의 지원을 통한 공세적 작전수행을 군사전략으로 삼았다. <표 1>은 통일 이전 동서독의 구체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내용을 보여준다.

<표 1> 통일 이전 동서독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 구분 | 서 독 | 동 독 |
|-------|--|--|
| 국방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간 군사동맹(NATO, WEU)에 의한 연대 방위정책” - 동서간 집단적 군사력의 균형 유지 - 동서간 집단적 군사력 대립의 극복 - NATO의 집단적 방위력에 의존하는 전제하에 서독 연방군 자체의 전력수준 고도로 유지 - 모든 국가의 군비제한 및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전쟁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샤바 조약기구(WP)에 의한 집단 군사안보 체제” - 소련군의 군사적 지원으로 힘의 우위 유지 - 단시간내 전투 돌입태세 완비 - 유사시 전투력향상을 위해 즉각 동원 태세 유지 - 전시 소련군 예하로 소속, 소련군 작전외도에 의거 전쟁수행 |
| 군사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의 “유연대응전략” - 작전개념: WP의 작전행동에 따라 지연전 - 방어전 - 공세 이전의 연계작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군 지원을 통한 공세적 작전수행 - 작전개념: NATO군 침략여부에 따라 소련군을 중심으로 공세적 작전수행을 통한 조기 결전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독일은 변화된 군사·안보적 환경을 파악한 바탕 위에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국방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재구성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군통합을 추진하였다.³¹⁾ 군통합의 내적 틀을 구성한 국방정책 재정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은 1989년 이래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국을 둘러싼 국제 군사·안보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동서 갈등은 1990년 11월에 CSCE 회원국 그리고 특히 NATO 및 WP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둘째, 독일은 변화없이 유효하며, 소련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된 NATO 및 EC에의 귀속성을 가진 채로 통일과 주권을 획득하였다. 구 동독의 군사력은 해체되며, 통일연방군에 편입을 원하는 군인들은 통합될 것이다. 셋째, 독일은 군사력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7만명으로 감축할 조약상의 의무를 진다. 넷째, 소련은 협정에 의해 자국의 군사력을 독일과 중부 동구국가들로부터 철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섯째,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감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제1차 CFE, 1990년 11월 19일 체결).³²⁾

31) 통일 이전 서독의 안보정책 수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약요소는 헌법과 NATO 조약이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2+4」협정과 독·소조약이 이에 추가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24조는 “독일정부는 평화수호를 위하여 집단안보체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독일은 유럽과 세계민족의 평화와 영속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권행사의 제한을 감수한다”, 「2+4」협정은 “통일독일의 헌법에 의거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행위, 특히 공격전쟁을 준비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990년 9월 13일 체결된 독·소 상호 우호협력 동반자 조약은 “양측은 방어위주로 전력을 정비하여 최소한도의 방어진력을 보유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216에서 재인용.

32) CFE의 기본조약과 세부의정서들(Protocol on Existing Types of Conventional Armaments and Equipment, Protocol on Procedures Governing the Reclassification of Specific Models or Versions of Combat-Capable Trainer Aircraft into Unarmed Trainer Aircraft, Protocol on Procedures Governing the Reduction of Conventional Armaments and Equipment Limited by th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Protocol on Procedures Governing the Categorisation of Combat Helicopters and the Recategorisation of Multi-Purpose Attack Helicopters, Protocol on Notif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Protocol on Inspection, Protocol on the Joint Consultative Group, Protocol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여섯째, WP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해체될 것이며³³⁾, 이로써 소련의 동맹국들은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안보관계에 가담하기를 원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과 기타 독일의 동맹국들은 유럽내, 그리고 독일내에 존재하는 그들의 군사력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여덟째, NATO가 1990년 7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새 군사전략의 최종안이 곧 확정될 것이다.³⁴⁾

유럽에서의 군사·안보적 상황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한 바탕 위에 독일은 향후 국방정책의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유럽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협력을 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향후 국방정책 및 안보정책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수준에서 국방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국내적, EC 및 CSCE, NATO, 그리고 유엔의 차원이다. 둘째,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은 위 네가지 영역에서 독일이 정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영향력을 동반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연방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의 원문은 주독대사관,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 감축(CFE) 협정,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7」(주독대사관 무관부, 1990.11) 참조.

33) 1991년 7월 1일 WP 회원국 정상들이 프라하에서 개최된 정치협의회 폐회문에 서명함으로써 1955년 5월 창설된 WP는 해체되었다.

34) Wolfgang Heydrich·Hans-Dieter Lemke·Joachim Rohde (eds.), *Die Bundeswehr am Beginn einer neuen Epoche. Anforderungen an die Streitkräfte und ihre rüstungsindustrielle Basis* (Baden-Baden, 1996); Hilke Brockmann, "Das wiederbewaffnete Militär. Eine Analyse der Selbstdarstellung der Bundeswehr zwischen 1977 und 1994", *Soziale Welt '94: Zeitschri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raxis*, 3(1994), pp. 279~303 참조. NATO의 새로운 전략은 1991년 11월 7일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NATO정상회담에서 윤곽을 드러내었다. 주요 내용은 제 3장 8절 「나」 참조. NATO, *The Alliance's New Strategic Concept: Agre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Rome on the 7th~8th November 1991* (Brussels, 1991) 참조.

군이 지휘통솔, 교육, 훈련, 군비 등의 분야에서 군사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여기에 관한 광범위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⁵⁾

이러한 국방정책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는 독일의 안보가 유럽내에서의 상황 전개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 국경을 넘는 그리고 대서양동맹 영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상황전개에 의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NATO의 의무는 물론 NATO의 독일의 동맹군사력과 통합·결속을 확고히 한다. 둘째, 독일군은 유엔의 요청에 의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한, 장차 유엔헌장의 범위 내에서 국제적 파견에 참여한다. 셋째, 북대서양동맹을 당분간 독일안보의 기반으로

35) 독일은 유럽환경의 변화를 “대결에서 협력으로”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향후 유럽에서의 국방정책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자체 국방력을 보유하지 않는 「유럽정치연합」(Europäische Politische Union, 현 유럽공동체(EU)의 당시 표현)은 생각할 수 없다.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연합의 공동행위를 위한 대외정책적, 안보정책적 활동영역이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정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관할권의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래의 대서양동맹 형태와 관련해서는 NATO의 틀내에 보다 강화된 서유럽안보구조가 개발되어 다른 유럽안보구조의 요소들을 보완·조정해야 한다. 이때 서유럽안보구조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서유럽안보구조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서양동맹이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유럽의 부분에도 안보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즉 전 유럽에 “보다 확장된 안보”(erweiterte Sicherheit)를 제공할 것인가의 물음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NATO는 유럽내에서 서부유럽국가들에 의해 건설된 유럽안보의 기반이며 유일하게 온전하고 조직화된 방위동맹이다. 전유럽을 위한 그러한 장점들을 동맹의 확대 없이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수한 안보문제, 즉 예를 들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중부유럽국가들을 “안보공백”이나 “완충지대”로 일컫는 안보문제를 관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넷째, 유럽에서의 정치적 발전은 CSCE의 틀내에서도 역시 갈등방지나 갈등종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의 창설을 앞당기고 있다. 다섯째, 유럽적 안보질서는 강한 검증력을 가진 군비통제를 요구한다. 연방정부는 군비통제과정을 지속하는데 힘써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단거리 핵무기는 유럽으로부터 철수되어야 한다. Unabhängige Kommission fü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Abschlußbericht und Empfehlungen* (Bonn, 1991.9.24), pp. 1~7 참조.

지속하되, 그 조직인 NATO를 국제적, 유럽적 안보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된 정치적, 군사적 요구들에 적합하게 한다. 넷째, 독일군의 파견은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파견에 대한 보다 확산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연방정부는 독일군이 NATO 틀내에서, 향후 유럽안보구조내에서, 그리고 유엔의 틀내에서의 요구들에 적합하게 파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요구사항들을 해결한다. 여섯째, 국제적으로 파견될 연방군부대를 위한 훈련과 무장을 적절하게 준비한다. 일곱째, 동유럽국가의 군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제도화된 관계를 활기있고 투명하게 건설한다. 양자적 접촉에서 협력, 정보교환, 신뢰구축 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내에서 군을 건설한 연방군의 많은 경험들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³⁶⁾

한편 국방정책을 실천해나갈 통일연방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첫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독일군은 1995년까지 37만명의 병력규모로 구성한다. 둘째, 군의 감축은 군의 조직 및 지휘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동반하는 바, 개혁의 핵심은 평화시에 군을 야전군과 향토방위군의 조직적인 혼성편제로 구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 “제4군구조”에서 “제5군구조”로 개편한다.³⁷⁾ 이에 따라 육군은

36) MOD Germany, *German Force Planning for the 1990s: The German Armed Forces after Unification* (Bonn, 1991); MOD Germany, *Current Aspects of German Security Policy* (Bonn, 1991); Heiko Biehl, *Die neue Bundeswehr. Wege und Probleme der Anpassung der deutschen Streitkräfte an di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Strausberg: SOWI-Arbeitspapier 12, 1998.8);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OKNR: NN 7623. 40 Jahre Bundeswehr, 5 Jahre Armee der Einheit* (Bonn, 1995); Volker Rühle, “Bundeswehr und europäische Sicherheit”, *Europäische Sicherheit*, 1(1996), pp. 9~16;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stab,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Die Bundeswehr der Zukunft. Bundeswehrplan '94* (Bonn, 1993), pp. 1~25 참조.

3개 혼성 야전·향토방위군사령부, 8개 혼성 사단·지구사령부, 3개 사단사령부를 운영하며, 그 산하에 다양한 수준의 장비를 보유한 28개 여단을 배속한다. 공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행단의 수를 1/3로 줄이고 지대공 방위를 대폭적으로 정예화한다. 해군은 2005년까지 합단의 수를 현재의 1/2인 90개 부대로 줄인다. 셋째, 각군의 병력규모는 1995년까지 증기적 차원에서 육군 약 255,400명, 공군 82,400명, 해군 32,200명으로 구성한다.³⁸⁾ 넷째, 기본복무기간 12개월을 바탕으로 한 총 37만명의 병력은 60:40의 비율로 약 22만명의 장기직업군인과 장기복무자 그리고 15만명의 의무복무자 및 연방군에 근무하는 예비역들로 구성한다.³⁹⁾

37) 서독 육군은 1956년 창설된 이래 통일시까지 4회의 군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일 이후 군통합 직후부터 1994년까지 제5차 군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제5차 군구조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제1~4 군구조가 부분적인 개편이었던 것에 비하여 각 군구조마다 최고사령부로부터 말단 소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했다는 데 있다. 그 중 상부구조 개선의 특징은 각군에 지휘사령부(작전사령부)를 편성하고 야전군과 향토방위군을 통합하여 단일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전후방의 구분을 제거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군사배밀도를 유지한 점이다(<표 3>참조).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226~227 참조.

38) 각군별로는 육군 69%, 공군 22%, 해군 9%의 구성비율로 이루어지며 인력구조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방군 인력구조 내용

| 분 류 | 육 군 | 공 군 | 해 군 | 계 |
|----------|---------|--------|--------|---------|
| 장기복무자 | 132,025 | 57,775 | 24,200 | 214,000 |
| 단기복무자 | 119,375 | 24,025 | 7,600 | 151,000 |
| 훈련장 관리요원 | 4,000 | 600 | 400 | 5,000 |
| 계 | 255,400 | 82,400 | 32,200 | 370,000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 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39) Unabhängige Kommission fü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Abschlußbericht und*

병역의무제와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결정이 내려졌다. 첫째, 중기적으로 12개월 기본복무기간의 일반병역의무제를 유지한다.⁴⁰⁾ 둘째, 이러한 병역형태는 장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1995년까지 과도적인 것이다. 만약 군병력이 37만명 이하로의 감축이 요구되어진다면 병역형태는 새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자발적인 지원군형태의 군복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⁴¹⁾ 셋째, 다국적, 국제적 파견이 예정되는 독일군부대는 훈련수준에 비추어 이를 위한 능력이 갖추어진

Empfehlungen, pp. 17~18; Klaus Kuhlen, "Das Neue Heer. Die Konzeption", *Soldat und Technik*, 3(1996), pp. 164~175 참조.

- 40) 연방정부는 1990년 8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1990년 10월 1일부터 군복무 연한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민방위군무연한을 20개월에서 15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약 30,000명의 병역감축 효과가 있었다. *Die Welt*, 1990.8.24; Der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 *Mitteilung AN DIE PRESSE XXVII/59* (Bonn, 1990), p. 1.
- 41) 특히 병력규모가 30만명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자들의 수가 병역의무자들의 수보다 월등하게 적어 병역평등제에 근간을 두는 병역의무제가 실시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1992년 1월 16일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군을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론이 벌어졌다. CSU의 지러(Zierer) 의원은 1991년도 병역의무 기피자가 150,000명에 달했고 연방군이 분쟁지역에 효과적으로 참전하기 위해서는 지원병이 더욱 적합함을 이유로 직업군인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70,000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1/4만 군복무를 하게 되고, 1/3은 군복무도 민방위(Zivildienst)도 하지 않게 되어 병역의무의 평등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채택하여 남·여 모두에게 사회근무의무(Soziale Dienstpflicht)를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FDP의 놀팅(Nolting) 의원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도입할 것과 병역의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위생병에만 여군을 채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군의 전병과에 대한 여군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CDU 원내총무 쇼이블레(Schäuble) 의원은 징병제를 고수하여 병역의무의 평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PD의 뷔로프(Bülow) 의원은 징병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연방군의 감축으로 지원병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병제도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격적인 군병력을 형성하여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2.1.17. 통일 이후 독일 내에서 전개된 병역의무제에 관한 찬반논의에 관하여는 "Wehrpflicht, Dienstpflicht, Zivildienst", *arni*, 10(1994), pp. 4~60;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ni*, 3(1997), pp. 4~11 참조.

장병들로만 구성하도록 하되 여기에는 의무복무자도 포함될 수 있다. 넷째, 국방정책적, 안보적 차원을 포함하는 유럽정치연합을 실현해 나가는 구도 내에서 “유럽의무병역제”(EURO-Wehrpflicht)의 도입을 통해 유럽단일병역제의 실천을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섯째, 감축된 연방군에 있어서 우수한 예비역, 특히 장교 및 하사관 예

<표 3> 통일 전후 독일 국방정책의 특징

| 통일전(제4군구조) | 통일후(제5군구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 공격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권의 위협요소에 중점 - 동부지역에 집중 배치 ○ 전·후방의 명확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진방어 - 지역방어 ○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부대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주 위기관리 ○ 전·후방 구분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방어 - 전방위 분쟁해결 ○ 행정적 차원에서의 부대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과 각 사단 책임지역 일치 - 전국적으로 균등한 군사밀도 추진 - 1~3개주에 1개 사단씩 배치 (16개주에 8개 사단) ○ 야전군과 향토방위군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지휘체제 유지 - 전시에는 분리운용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 분야: 200-75,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비역들은 큰 중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시기적절한 예비역활용방안의 재수립을 통해 이들을 위한 더욱 많은 훈련장을 확보한다.⁴²⁾ 통일독

42) Paul Klein·Rolf P. Zimmermann (eds.), *Die zukünftige Wehrstruktur der Bundeswehr. Notwendige Anpassung oder Weg zur Zwei-Klassen-Armee?*

일의 군통합은 이러한 국방정책의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표 3>은 통일 전후 독일 국방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3. 군통합 과정 및 기구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이 경제·사회 통합협정에 합의하고 이를 7월 1일 발효시킴에 따라 동독은 사실상 껍질만 남고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나찌독일의 패망으로부터 45년, 베를린봉쇄로부터 42년, 동독의 베를린장벽구축으로부터 29년 만에 사실상 독일은 통일된 것이다. 동 협정에 의해 동서독은 같은 화폐를 쓰고 동일한 재정 및 세제 아래 서독이 전 독일에 경제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통일의 1단계를 이룬 것이다. 이어 7월 콜과 고르바초프간의 코카서스 회동에서 통일독일의 NATO가입과 군사력 규모에 관한 원칙이 합의되자 통일의 제2단계인 군통합은 이제 거리낌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독일의 군통합은 크게 준비기, 동독인민군 인수기, 개편기, 정착기의 4단계로 추진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⁴³⁾ 군통합의 준비기는 「2+4」협상이 본격화되고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됨에 따라 서독 국방부가 군통합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 450개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한 1990년 6월부터 1990년 8월 17일 서독이 통일연방군의 구성 준비를 위해 동독의 군축·국방부(Ministerium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⁴⁴⁾와 합의하에 서독

(Baden-Baden, 1997); "Schwerpunkt: (K)Eine Zukunft der Bundeswehr", *FriedensFORUM: Rundbrief der Friedensbewegung*, 4(1994), pp. 23~42 참조.

43)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 24(1998), pp. 184~186 참조.

44) 1990년 3월 자유총선거 이후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내각이 국방부를 군축·

국방부의 동부과건소 형태인 「통합대비단」을 동독 군축·국방부내에 설치한 시기이다.⁴⁵⁾ 동베를린 인근, WP의 동독사령부가 있었던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한 동독 군축·국방부 내에 설치된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동독지역내 연방군의 미래구조형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력, 자재,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군하부구조, 통신망, 위생시설, 인민군의 경제활동 등에 관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명령권과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 대비한다. 셋째, 동독지역에 신설될 지휘조직의 구성과 숙영지에 관하여 준비한다.

동독인민군의 인수기는 1990년 8월 23일 서독 국방부가 통합대비단을 사령부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통일 이전까지 동독 군축·국방부에 대한 인수작업을 개시한 시기이다. 서독은 8월 25일 동독인민군의 해체와 인수작업에 책임을 질 독일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를 설치하고 그 사령관에 서독 육군중장 쉐봄(Jörg Schönbohm)을 임명하였으며, 동부지역사령부를 임시로 서독 국방부내에 설치하였다. 8월 28일에는 서독 연방군의 일부 인원을 동독에 파견하여 군통합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동독군의 감축과 동독 군축·국방부의 임무를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당시에는 약 2,000여명의 서독군 간부가 동독지역에서 통합준비를 위해 지휘관 혹은 참모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육군의 경우 사단, 여단, 대대급에 156개의 지휘관 및 참모팀을, 지원부대급에 123개의 참모팀을 배치하였다. 그의 100여개의 훈련소

국방부로 개칭하였다.

45) 이미 1990년 3월 22일 서독은 동독인민군 복무자중 3년 미만 근무자중 지원자를 연방군에 편입시킨다는 인민군의 연방군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7월 4일 복무기간을 12개월에서 단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8월 3일에는 동독인민군중 5만여명을 연방군에 편입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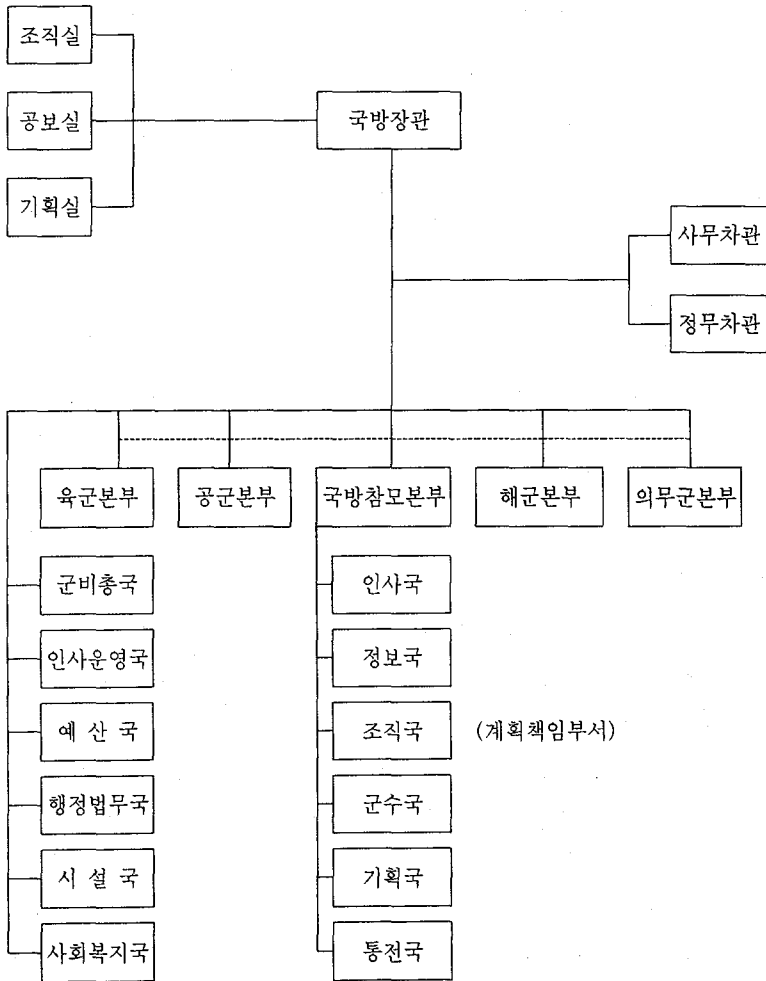
에 175개의 교관팀(중·소대장 및 장교 1명씩)을 파견하여 병역의무로 입영하는 병사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해군의 경우 3개의 지휘관팀과 9개의 지원팀 약 100명을 파견하였다. 공군의 경우 38개의 지휘관팀, 30개의 지원팀, 50개의 교관팀 등 약 500명을 파견하였다.

한편 8월 29일에는 서독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인사국장이 동독 포츠담을 방문하여 동독 육군참모총장과 군통합시 병력인수에 관해 논의하였다. 8월 31일 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독일통일 회복에 관한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이른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⁴⁶⁾에 서명한 서독은 9월 10일 향후 통일독일의 연방군 병력을 1994년까지 37만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동독인민군 가운데 5만명을 인수한다는 방침과 통일 이후 동독인민군에 대한 재교육의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4>는 서독 국방부내 군통합 책임부서를 보여준다. 국방부 전부서는 업무를 분담하고 부서별로 실무작업반을 편성·운영하여 군통합을 추진하였다. 계획책임부서는 국방참모본부 조직국이 담당하였다. 한편 <표 5>는 동부지역사령부의 편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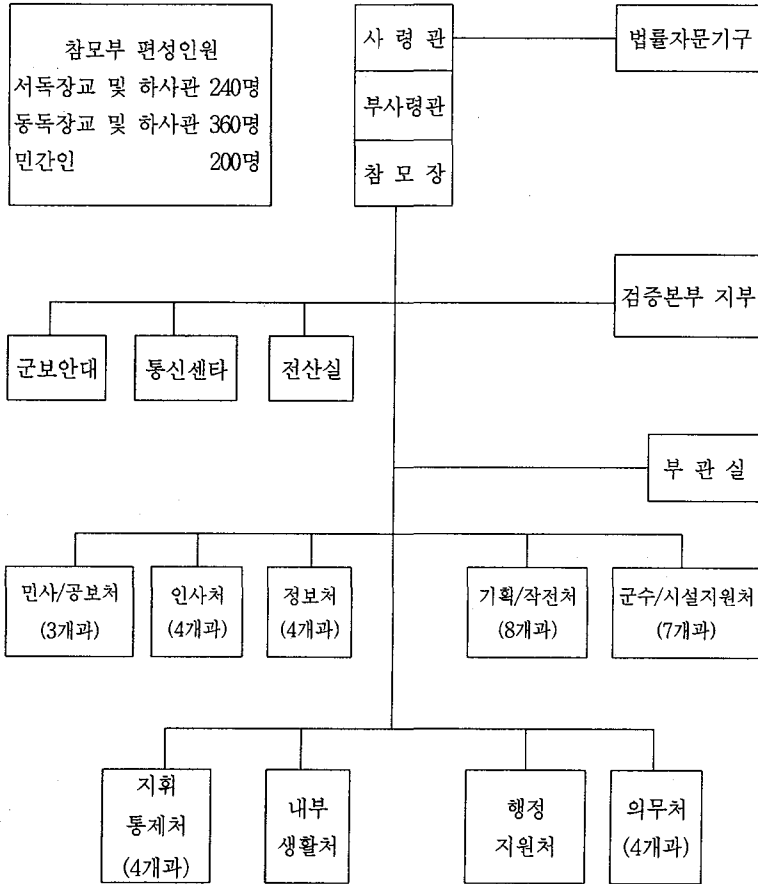
동독인민군 개편기는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져 서독 국방장관이 동독인민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시점부터 군통합의 1차 목표시한으로 설정한 1991년 3월까지 동독인민군의 개편작업이 추진된 시기이다. 통일 직전 동독이 WP에서 탈퇴하였고 10월 3일 독일이 통일함에 따라 서독군은 독일 전체에 대한 국방의 임무를

46)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pp. 41~78 참조.

<표 4> 서독 국방부내 군통합 책임부서(----- 국방기획통제)



<표 5> 동부지역사령부 편성



인수하였다.⁴⁷⁾ 독일은 통일과 함께 국방부 내에 동독인민군을 관할

47) 1990년 9월 24일 동독 군축·국방장관 에펠만(R. Eppelmann)과 WP 총사령관 루셰프(P. Luschew)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연합군으로부터 동독인민군 병

할 의청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서독 국방부 동부파견소인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의청을 설치함에 따라 동독 군축·국방부는 해체되고 대신 동독지역 전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 명령기관으로서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그 예하에 과도기적 잠정편성으로 육군 동부지역사령부, 해군 동부지역사령부, 공군 동부지역사령부를 두었다.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는 동독인민군을 예속시키고, 동독의 국경수비대를 해체하는 등 군통합의 세부적인 추진에 돌입하였다. 동서독 군통합의 핵심은 첫째, 동독 군축·국방부 및 인민군을 해체하고, 둘째, 1994년 말까지 통일연방군의 병력을 총 370,000명 선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사령부는 1차 목표로 “독일연방군 구조 2000”에 입각하여 1991년 3월까지 새로운 연방군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는 해체, 새로운 군 구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대는 최대한 축소, 새로운 군 구조에 필요한 부대는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동부지역사령부의 구체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권과 지휘권의 인수시점에 존재하던 육·해·공군 제 부대를 지휘한다. 둘째, 추진중인 지휘조직의 분산을 실현한다. 셋째, 미래의 병력구조에 부적합한 근무처와 단위부대를 해체한다. 넷째, 동독군의 장비, 탄약 및 시설을 인수, 평가, 활용하거나 혹은 폐기처

력의 탈퇴에 관한 의정서」(Protokoll über die Herauslösung der Truppen der Nationalen Volksarme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 den Vereinten Streitkräften der Teilnehmerstaaten des Warschauer Vertrages)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동독인민군은 WP에 군부대 혹은 합대를 파견하거나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의정서 4항에서는 동독이 소련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특수 첨단장비와 기술을 소련측에 인계한다고 명시하였고, 5항에서는 동독이 WP로부터 수령한 군조직과 체제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필요한 기관에 반납하거나 혹은 규정에 의거 파기하고 제3국에 인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125.

분할 때까지 관리한다. 다섯째, 소련군의 철수를 지원한다. 동독인민군으로부터 지휘권의 인수과정에서 동독인민군의 사단급 이상 모든 지휘관 및 참모는 서독장교로 보직되었으며, 연대 및 대대급의 지휘관 및 주요 참모도 서독 장교로 교체되었다.

군통합의 정착기는 1차 동독인민군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동부지역사령부가 1991년 4월 1일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육·해·공군 각 군에 이양한 시점부터 새로운 연방군 건설을 위한 인적 개편과 물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구 서독지역 출신 장병과 구 동독지역 출신 장병들간의 군내 인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기이다.⁴⁸⁾ 4월 1일 동부지역사령부 예하의 육군은 동부지역군단으로, 해군은 로스톡(Rostock) 해군사령부로, 공군은 제5공군사단으로 각각 예속·전환되었다. 동독지역에서의 인민군해체와 통일연방군에 입각한 군사지휘체계 및 부대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자 동부지역사령부는 1991년 6월 30일부로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동부지역군단 및 향토방위사는 육군지휘본부에, 제5공군사단은 공군사령부에, 그리고 로스톡 해군사령부는 해군지원사령부에 배속되었다. 군통합의 후속 개편작업은 연방국방부와 각 해당부대 및 기관이 직접 관장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6월 30일 동독인민군 간부에 대한 최종 선발·편입이 완료되었으며, 1994년 8월 31일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동독인민군의 마지막 전차가 파기되었다. 1996년 3월 폐기대상 장비의 보관창고가 최종 처리됨으로써 독일군통합은 구 동독지역의 시설보수와 일부 부대 재배치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되었다.⁴⁹⁾

48) 동부지역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쉐블중장은 1991년 4월 16일 이임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동부지역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폰셰벤(Werner von Scheven) 소장이 취임하였다.

한편 독일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군기구를 재편하여 다수의 군기관을 통일 이후 새로운 연방주가 된 구 동독지역으로 이전시켰다. 육군장교학교(Offiziersschule des Heeres)가 하노버와 뮌헨에서 드레스덴으로, 해군기술학교(Marinetechnikschule)가 파로프에서 슈트랄준트로 이전하였으며, 군사(軍史)연구소(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는 프라이부르크로부터 프로이센 군사전통의 중심지였던 포츠담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현재 정보 및 통신학교(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로 개편된 심리부대, 뮌헨에 있던 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콜벤쯔 소재 정신전력학교의 일부 등이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전하였다.⁵⁰⁾

4. 병력감축

통일당시 서독은 495,000명의 정규병력과 20,000명의 국경수비대를, 동독은 173,100명의 정규병력과 47,000명의 국경수비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독인민군은 1956년 3월 1일자로 당시 존재하였던 동독인민경찰부대(Kasernierten Volkspolizei: KVP)를 기초로 창설되었다. 병역제도는 1961년 말까지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고 1962년 1월부터 병역의 무제가 도입되었다. 군조직 및 운영은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는 1980년까지 2,400명의 장교와 175명의 장군이 소련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⁵¹⁾ 동독인민군의 병력구조는 소련

49) 동서독 군통합과정의 주요일지에 관하여는 한민구, 「통일독일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통합작업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의 부록 참조.

50) 통일원,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부록」(서울: 통일원, 1996), pp. 9~17 참조.

을 모방하여 지역별·내용별로 분할되어 있었다. 총 5개지역으로 제1군사지역은 슈트라우스베르크 중심의 국방을 위한 특수부대, 제2군사지역은 슈트라우스베르크-에거도르프(Strausberg-Eggerdorf) 중심의 공군과 방공부대, 제3군사지역은 라이프찌히(Leipzig) 중심의 육군, 제4군사지역은 로스톡 중심의 해군, 제5군사지역은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중심의 육군 등으로 구성되었다.⁵²⁾

동독이 가졌던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 외의 무장조직으로는 국가보위부(Staatssicherheit) 병력, 경찰, 직장전투부대 등이 있었다. 한편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는 소련군 385,0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서독지역에는 미국을 비롯한 7개국의 총 402,900명의 외국군이 주둔하였으며, <표 6>은 동서독군과 주둔외국군의 구체적 인원과 편성을 보여준다.⁵³⁾

동독인민군 병력을 통일 이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이 있었다. 동독인민군은 1994년까지 전환기가 연장되어 그 기간에 통일독일에 두개의 독일군이 존재하는 방안을 기대하였다. 이에 반해 연방정부는 동독인민군을 해체하고 연방군에 잔류를 원하는 인민군 병력을 연방군에 임시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⁵⁴⁾

51) 동독인민군의 역사와 역할에 관하여는 Detlef Bald·Reinhard Brühl·Andreas Prüfert (eds.), *Nationale Volksarmee - Armee für den Frieden: Beiträge zu Selbstverständnis und Geschichte des deutschen Militärs 1945~1990* (Baden-Baden, 1995) 참조.

52) "Die Nationale Volksarmee(NVA)",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d.), *DDR Handbuch* (Köln, 1985), pp. 931~933 참조.

53)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4」, p. 5, 15.

54) 이 경우에도 얼마만큼의 동독인민군 병력을 편입시켜야 하는가 혹은 모든 장교 및 하사관을 배제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두고 서독군 지휘관 내부에 의논이 분분하였다. "Blick nach vorn",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18(1990), pp. 1~3 참조. 한편 서독군의 흡수통합방안에 위기감을 느낀 동독

<표 6> 통일 이전 동서독군과 주둔 외국군의 인원 및 편성

| 구 분 | 서 독 | 동 독 |
|-------|---|---------------------------|
| 육 군 | 345,000 | 120,000 |
| | 3개 군단 12개 사단 3개 지역방위사령부 6개 관구사령부 | 2개 군사령부 6개 사단 2개 지역사령부 |
| 해 군 | 39,000 | 16,000 |
| | 6개 전단 2개 지원사 항공대 | 3개 전단 1개 통신 및 지원사 항공대 |
| 공 군 | 111,000 | 37,100 |
| | 2개 전술항공사단 2개 방공사단 | 2개 비행사단 1개 방공사령부 |
| 계 | 495,000 | 173,100 |
| 주둔외국군 | 402,900 | 338,000 |
| |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캐나다, 덴마크) 14개 사단 | 소련군 19개 사단 |
| 국경수비대 | 20,000 | 47,000 |

* 서독주둔 외국군의 구성은 <표 12> 참조.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 분야 200-75」(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 24(1998)

직업군인단은 1990년 8월 3일 양독 정부에 동독인민군의 장래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동독 인구에 비례하여 최소한 7만명 규모의 동독군을 유지해줄 것과 동독군을 서독군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인사선발위원회에 동독군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157.

동독군의 해체결정은 1990년 중반에 이르러 확정되었고, 10월 3일 통일과 동시에 인민군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국방부는 173,000명의 인민군 가운데 통일시점까지 잔류한 89,000여명(의무복무자 39,000명, 장·단기 근무자 50,000명)의 병력, 19,000명의 국경수비대, 40,000명의 민간군속을 포괄하는 구 동독군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장악하였다.⁵⁵⁾ 이후 인수한 89,000여명 병력 가운데 통일연방군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50,000여명을 동부지역사령부에 예속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류·선발심사 통한 연방군 편입을 실시하는 한편,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방군의 상비병력을 370,000명으로 감축하며, 총 민간군속수를 서기 2000년까지 약 151,0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동독인민군의 연방군 편입에는 동서독이 1990년 8월 31일 체결하고 9월 23일 발효시킨 「통일조약」의 「부록 I: 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규정」 제 XIX장 「공무원계 인사법과 군인법 업무영역 B: 군인법 제 ii 절 동독인민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준이 되었다.⁵⁶⁾ 제2조에 따르면 동독의 직업군인 또는 장기복무군인의 복무관계는 통일과 동시에 소멸하며, 이들 중 통일연방군으로의 편입은 선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제7조에는 동독군의 장기복무자 및 직업군인이 전역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장기복무자의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시키는 것으로, 직업군인이 현행법상 의무복무기간이 끝났거나 이미 지난 경우 전역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기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이 요구되는 인성

55) 동독 군축·국방부는 1989~1990년의 정치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키고 300여명의 장성급 장교를 전원 전역하도록 조치하여 통일 후 병력감축을 용이하게 하였다.

56) 민족통일연구원 편,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76~482 참조.

혹은 전문적 자질에 적합치 않은 경우, 부족한 수요에 의하여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현재까지의 복무위치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해체되거나 그 자체의 주요 변화, 통합, 혼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전역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은 즉각 전역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자. 특히 1966년 12월 19일 「민간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1948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해친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둘째, 동독의 국가안전부 1청에서 근무한 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 등이었다.⁵⁷⁾

제8조에는 동독의 장기복무자 및 직업군인은 군인법 규정에 따라 자유선택적 책임하에 군인으로서 2년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가 정하는 조직, 명령, 방법에 의해 구성되는 자율위원회가 제출하는 해당 직업군인에 관한 인사상의 특징을 청취한 후 직업군인의 전역과 복무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원자가 50세를 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직전인 1990년 10월 2일까지 모든 장군과 제독, 정치장교, 군검찰 및 법무요원, 55세 이상의 모든 직업장교 등은 퇴역조치되었다.⁵⁸⁾

57) 동독인민군 가운데 15%의 군인들이 동료들 감시하거나 밀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독일은 이들을 찾아내 정리하였다. 한편 서독으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한 국경수비대요원도 편입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의 법적 처벌에 관하여는 Roman Grafe, "Niemals Zweifel gehabt. Der Prozeß gegen die Grenztruppen-Führung der DDR",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6(1996), pp. 862~871; Roman Grafe, "Ziele mit dem ersten Feuerstoß vernichten. Urteil gegen die Militärführung der DDR",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4(1997), pp. 525~526 참조.

이러한 원칙아래 국방부는 잔류를 희망하는 동독인민군 출신 50,000여명을 개편후 활용 가능한 직위는 우선 인수, 불필요한 직위는 선별 인수, 정치장교 및 심리전 요원 등은 즉각 전역 등의 선발심사를 실시하였다. 병력선발 및 편입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지원단계로서 통일 이후 1991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1991년 6월 이전 정년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동독인민군 출신 장병에게 2년 계약근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조기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는 자는 7개월분의 퇴직금과 현역 당시 급여의 75%를 연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50세 이상의 간부 대부분과 40~50세 사이 간부중 상당수가 전역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 당시 잔류한 대령이하 동독군장교 32,000명 가운데 24,000명이 23,000명의 하사관과 함께 서독군에 편입되었으나 그 중 약 절반이 1990년 말까지 군을 떠났다.

2단계는 계약근무자 선발단계로서 2년 계약근무 희망자 25,000명(장교 11,700명, 하사관 12,300명, 병 1,000명)을 대상으로 독일정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서독군부대에 6~8주간 배치해 특별훈련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사상성과 근무자질을 검사하였다. 국방부는 이들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통합심사위원회”(Komitee für Einigungsprüfung)를 설립·운용하였다.⁵⁹⁾ 그 결과 지원자 중 18,000명(장교, 6,000명, 하사관 11,200명, 병 800명)이 한시적 2년 계약 근무자로 선발되었다.

3단계는 최종선발단계로서 1차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국방부는

58)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8(1992), pp. 845~857 참조.

59) Heinz-Joachim Melder, “Vorbildliche Eingliederung der Streitkräfte in die Gesellschaft”, *Das Parlament*, 1~2(5/12 January 1996), p. 18.

2년간 이들을 관찰하고 근무실적 및 평정에 따라 1993년 9월 30일 최종선발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독인민군 출신 가운데 장교 3,027명, 하사관 7,639명, 병 207명 등 총 10,873명이 통일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⁶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독인민군의 일부가 통일연방군의 구성에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편입·정착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최초의 동독인민군 출신 대대장이 부임할 수 있었다. <표 7>은 이상과 같은 통일연방군에 대한 동독인민군의 편입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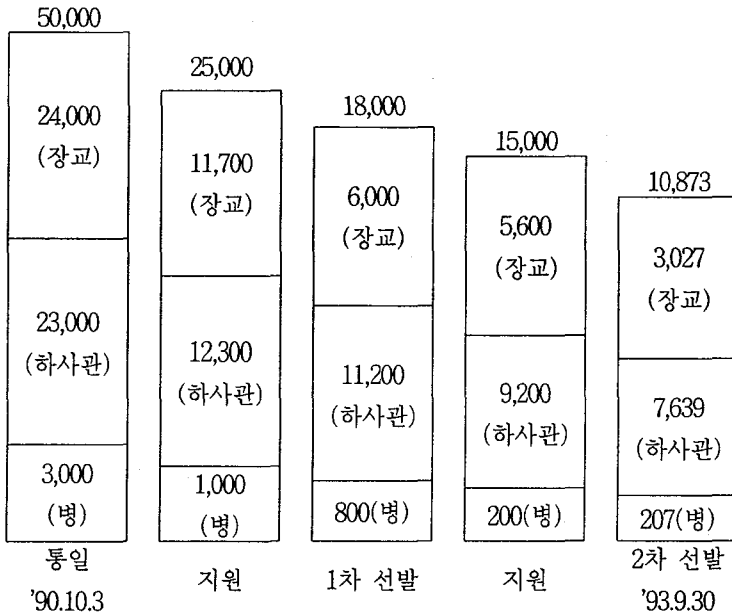
그러나 인민군의 해체, 연방군에 소수의 인민군 편입으로 인해 이들의 실업과 가족들의 향후 대책은 독일에 커다란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약 12,000명의 탈락 인민군에게 민간직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등 인민군들에 대한 정착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회는 일부분에 국한되었다.⁶¹⁾

새로운 연방주인 브란덴부르크는 EC의 자금으로 조성된 유럽사회기금(Europäischer Sozialfonds)의 재정지원을 얻어 동독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재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한편 인민군에 복무했던 직업군인들중 다수는 민간의 보안관련 직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장교 혹은 보안요원들은 일찌감치 퇴역하도록 강제되었고, 이들은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의 확고한 지지세력이 되었다.

60)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stab,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Bundeswehr-Streitkräfte der Einheit. Drei Jahre Bundesweh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p. 22;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162~165;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p. 191~192 참조.

61)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Weißbuch 1994.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Lage und Zukunft der Bundeswehr* (Bonn, 1994), p. 16. 특기할 만한 점은 불필요하게 된 동독군과 민간군속의 상당부분이 단순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추적도 불가능하여 그들의 장래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한 당국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었다.

<표 7> 연방군에 대한 동독인민군 편입과정



출처: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stab,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Bundeswehr-Streitkräfte der Einheit. Drei Jahre Bundesweh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한편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서독연방군 출신 장교들과의 균형을 위해 1~3계급씩 강등조치가 취해졌다. 동독군 장교들이 서독군 장교들에 비하여 대체로 진급을 빨리 하였고 따라서 병력통합과정에서 서독군 간부의 복무연한에 맞게 계급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계급조정은 대부분 1계급 하향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기술장교들의 경우

에는 2~3계급까지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다. 동독인민군 출신 장군의 경우 전원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동독 의무감(소장)을 대령으로 인수하였고, 그외 5명의 장군을 전역조치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군고문으로 활용하였다.⁶²⁾

5. 무기 및 장비 처리

통일후 독일은 동독인민군과 중무장했던 국경수비대, 국가안전부 요원, 경찰 등이 사용했던 모든 군사무기 및 장비를 인수하였다. <표 8>은 통일 당시 동서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현황을 보여준다.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의 처리는 크게 1990년 11월에 CSCE에서 합의된 CFE상의 '감축대상 장비'와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CFE 제8조에는 각 장비형태별 일반적인 감축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감축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유럽 주둔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에 의해 제한된 감축대상 무기 및 장비의 감축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되었다.⁶³⁾

CFE 제8조는 장비형태별 감축방법으로 우선 전차 및 장갑차의 경우에는 파괴 혹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고정 전시용 배치, 지상 표적으로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포병화기의 경우에는 파괴 혹은 고정 전시용 배치, 자주포는 지상표적으로 사용 등으로, 항공기의 경우에는 전술기는 파괴, 고정 전시용 배치, 지상교육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전투 불가능한 훈련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무장 훈련기

62)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16 5~166;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 192.

63) 주(註) 32 참조.

로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공격 헬기의 경우에는 파기, 고정 전시용 배치, 지상교육용으로 전환 및 재분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표 8> 통일 이전 동서독군의 주요 장비현황

| 구분 | 서독 | 동독 |
|----|---|---|
| 육군 | 전차: 4,227대 장갑차: 6,201대 야포: 2,488문 대전차포: 3,363대 헬기: 697대 | 전차: 3,150대 장갑차: 6,400대 야포: 2,500문 SA계열미사일: 300기 중·단거리미사일: 60기 총기류: 약 170만정 |
| 해군 | 잠수함: 24척 구축함: 7척 고속공격함: 38척 소해정: 57척 전투기: 123대 무장헬기: 12대 | 전투함: 19척 경비정: 38척 기뢰정: 42척 지원함: 15척 헬기: 12대 기타 선박 |
| 공군 | 전투기: 486대 정찰기: 60대 헬기: 96대 수송기: 162대 | 전투기: 275대(MIG-29: 24대) 헬기: 140대 수송기: 32대 미사일: 205기 기타 훈련기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CFE가 규정한 통일후 연방군 전력보유 상한선은 장갑차 4,166대, 전차 3,446대, 야포 2,705문, 전투기 900대로서 그 이상의 초과부분은 감축되어야만 하였다. 또한 감축은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16개월내에 25%, 28개월내에 60%가 진행되어야 하고 40개월내에 완료되어야만 하였다.⁶⁴⁾

CFE의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처리에 따르는 비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내·외 판매를 우선 추진하되 독일의 법률 및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였다. 대외판매는 NATO의 승인하에 실시하였으며, NATO 비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경우에는 연방안보회의(Bundessicherheitsrat)가 심사하여 분쟁지역으로는 판매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CFE의 감축대상 장비 이외의 장비처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었다. 첫째, 연방군 및 기타 분야의 자체 소요 충족. 둘째, 통일조약에 명시된 공공목적 사업지원을 위해 신연방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적법단체에 무상지원. 셋째, 타 정부에 판매. 넷째, NATO 회원국에 지원. 다섯째, 전시용 목적으로 지원. 여섯째,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⁶⁵⁾

이러한 원칙아래 독일이 통일 후 인수한 동독인민군 무기 및 장비 가운데 CFE상 감축대상 혹은 그 이외의 무기 및 장비로서 실제 폐기처리된 수와 형태는 <표 9>와 같다. 이를 참고할 때 실제 CFE가 제시한 수보다 훨씬 많은 장비가 폐기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일연방군이 제5군구조 및 37만 병력 상한선을 고려할 때 구 서독군의 장비로 소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독군 장비도 감축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감축의무보다 많은 양의 구 동독군 무기 및 장비를 폐기처리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까지 폐기된 약 2,760여대의 전차들은 철강은 용광로에서 용해되고 나머지 부품들은 자동차생산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한 대당 폐기 비

64)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 pp. 21~22.

65)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176~177.

용은 약 11,000 마르크가 소요되었으며, NATO는 전차 한 대당 1,000 달러를 폐기비용으로 지원하였다.⁶⁶⁾

<표 9> 동독군 무기 및 장비 처리현황

| 구 분 | | 계 *()안은 감축의무 | 산업체 파기 | 연방장비 /물자 처리회사 판매 | 박물관 제공 /판매 | 제3국 제공 /판매 | 통일조약 근거, 무상제공 | 연방군내 타 목적으로 전용 |
|------------------------------|---------------|---------------------|-----------|---------------------------|------------------|------------------|---------------------|-------------------------|
| CFE 협약상 폐기 대상 장비 | 전 투 기 | 360(140) | 168 | 120 | 29 | 21 | 5 | 25 |
| | 공격용헬기 | 51(0) | . | . | 5 | 42 | . | 4 |
| | 전 차 | 2,761(1,914) | 2,327 | . | 33 | 263 | . | 138 |
| | 장 갑 차 | 6,050(4,145) | 4,160 | . | 50 | 1,720 | . | 120 |
| | 화 포 | 2,199(1,344) | 1,302 | . | 27 | 832 | . | 38 |
| 계 | 11,429(7,573) | | | | | | | |
| 기타 장비 | 기타장갑차 | 3,417 | 2,337 | . | 46 | 998 | . | 36 |
| | 훈련용비행기 | 52 | . | 18 | 10 | 24 | . | . |
| | 기타헬기 | 134 | 16 | 48 | 29 | 10 | 10 | 21 |
| | 계 | 3,603 | | | | | | |

출처: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 24(1998)

한편 독일은 CFE를 준수하는 틀내에서 동독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부대를 연방군과 동일한 무기 및 장비로 무장시키되, 인민군이 사용했던 무기 및 장비는 선별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독일은 동독군 무기 및 장비를 특정 보관장소에 집결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경제, 보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처리는 독일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을 소요하여 5년 여가 걸렸던 어려운 과제였다.

66) 주독대사관,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21」,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3.8.30~9.5).

동독인민군의 무기 및 장비의 처리는 이미 통일 이전 동독의 과도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반체제인사들로 구성된 임시내각이 “변화”(Die Wende)를 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및 장비의 처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989년 12월 중순에는 군개혁을 위한 특별원탁회의가 열렸다. 자유총선이 실시된 직후 1990년 3월에는 새로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내각이 군축·국방부를 신설하여 무기 및 장비의 처리를 추진하게 하였다. 1990년 여름 동독은 대량의 인민군 장비를 세계시장에 판매하기로 하고 8~10월에 걸쳐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그 결과 군장비 수출에 관한 44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MIG 전투기와 다수의 해군함정을, 폴란드가 MIG 전투기를, 헝가리는 200대의 T-72 전차를, 벨기에의 기업은 100대의 T-72 전차와 34대의 중무장헬기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들이 포함되었다.⁶⁷⁾ 동독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서독 국방부는 동독 군장비의 일부가 군사적으로 필요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독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계약은 철회되었다.

통일 이후 서독 연방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조치는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에 대한 회계·관리체계에 관한 조사였다. 최초의 조사결과 실제 확인된 무기 및 장비현황은 동독군의 장부상 규모와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적은 수량이었으나, 이후 2년간의 정밀조사 끝에 동독의 장부상에 기록된 규모와 근접한 규모의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⁶⁸⁾ 이를 토대로 연방군은 이들의 처리방안을 첫째, 연방군이

67) Otfried Nassauer, “An Army Surplus - The NPA’s Heritage”, Edward J. Laurance-Herbert Wulf (eds.), *Coping with Surplus Weapons: A Priority for Conversion Research and Policy* (Bonn: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1995), p. 38.

68) Deutscher Bundestag, *Verteidigungsausschuß* (19 December 1991), p. 19;

당분간 사용, 둘째, 향후 평가 후 사용 혹은 연방군이 과도기적으로 사용, 셋째, 즉각 폐기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제1범주에 해당하는 주된 유형은 MIG-29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들로 연방군은 이들을 2000년 이후에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제2범주에는 Mi-24 공격용헬기와 Mi-8 수송용헬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의 대부분의 인민군 무기 및 장비, 예를 들어 98%의 전차, 95% 수송용 장갑차(Armoured Personnel Carriers: APCs), 95%의 야포 등은 제3 범주에 속했다. 이들 무기 및 장비는 특별저장소에 집적되어 수출, 대외군사원조, 기술정보교환프로그램 - 특히 독일과 미국⁶⁹⁾, 독일과 이스라엘간 - 등에 의해 처분되거나 혹은 해체되었다.

그 중에서 연방군이 인민군의 유산을 처리한 주된 방안은 수출과 군사원조 형식의 지원이었다. 1992~93년간 독일의 전차수출 가운데 36.4%, APCs 수출의 경우 47%, 야포 수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민군장비였다. 항공기의 경우 독일 자체가 상당한 수량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사용하였던 MIG-21/23 및 SU-22 전투기가 대외수출에 차지한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걸프 전쟁의 발발은 인민군장비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미군은 상당한 수량의 사위설비, 급수설비, 대 ABC무기 보호설비를 갖춘 특수 트럭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연합국측의 걸프전쟁 비용에 독일이 기여한 10억달러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러한 장비제공으로 이루어졌다.

걸프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개전 초기 터키는 NATO회원국이 회원국에게 지원하는 NATO군사원조(NATO-Materialhilfe)의 틀내에서 독일의 대외군사원조란 이름하에 상당한 양의 인민군장비를 제공받

Deutscher Bundestag, *Dokument 12/2026, Attachment 1.*

69) 독일은 미사일이 장착된 소련제 "Tarantul" Korvette 함정을 미국에 제공하였다.

았다. 303,934정의 Kalashnikov형 소총과 약 8,300만발의 탄약, 4,966정의 RPG-7 경화기와 20만발의 탄약, 2,500정의 기관총, 300대의 BTR-60형 APCs, 그의 대량의 탄약이 터키에 지원되었다. 터키군은 이들 무기의 대부분을 주로 쿠르드족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예비부대용으로 사용하였다.⁷⁰⁾

터키가 구 동독무기로 군사력을 증강하자 경쟁관계에 있던 그리스도 상응하는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 역시 NATO군사원조의 형태로 501대의 BMP-1 APCs, 158대의 RM-70 다연발로켓발사대와 205,000발의 포탄, 대전차무기로 21,675정의 RPG-18과 7,000발 이상의 로켓포탄, 방공무기로 12대의 OSA 지대공 유도탄발사대와 924기의 유도탄 및 306정의 ZSU-23 대공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⁷¹⁾ 독일은 NATO 동맹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군사적 현대화가 뒤진 터키와 그리스를 군사원조란 이름하에 잉여장비의 처리장소로 활용한 것이다.⁷²⁾

한편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를 감축하기로 한 CFE는 대규모의 무기이전을 촉발하였다. 협정에 따라 독일을 포함하여 과거 동·서간 경계선에 위치하였던 서부유럽국가들은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감축하거나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무기를 단순히 폐기하기보다 잉여무기를 같은 NATO 회원국으로서 무기현대화의 수준이 낮은 변방국가들에게 군사원조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무기체계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무기를 이전

70) Otfried Nassauer, "An Army Surplus - The NPA's Heritage", p. 45. 터키가 구 동독군 무기를 쿠르드족 박해에 사용한 것이 1992년 3월 독일 언론에 의해 공개, 비난되자 독일은 5월에 예정되었던 외무 및 노동부 장관의 터키 방문계획을 취소하였고, 터키는 독일의 대터키정책이 히틀러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난하였다. *Süddeutsche Zeitung*, 1992.3.30.

71) Deutscher Bundestag, *Verteidigungsausschuß* (21 January 1994), p. 12.

72)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RÜT II 1* (5 October 1991).

받은 국가들은 새로운 무기의 유입으로 CFE에 규정된 무기상한선을 초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하거나 혹은 제3국에 무기를 처분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터키는 이를 빌미로 이라크계 쿠르드족에게 동독인민군장비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NATO 비회원국으로 대량의 동독인민군 장비를 획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독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함정의 대부분인 총 39척의 군함을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였다.⁷³⁾ 그의 핀란드가 NATO 비회원국으로서 T-72 전차 100대와 약 300문의 야포를 구매했다.⁷⁴⁾

독일이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탄약량은 서독군 보유탄약량의 2.5배 수준인 약 30만톤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다수의 무기체계를 폐기·처리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동독군 탄약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이 탄약처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탄약에 대한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경계하는 것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탄약처리시설은 뮌스터(Münster) 소재 연방군 위험물 처리 연

73) 1993년 5월 30일 군비증강을 반대하는 데모대들이 동해의 섬 우세돔(Usedom)에 위치한 페넨뮈데(Peenemünde) 항구에서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고자 하는 구 동독 해군함정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일이 제3세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며, 구 동독인민군 보유 무기들은 전부 폐기되어야 하고, 군사독재자들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도발하는데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밝혔다. 한편 독일은 1991년 12월 우루과이에 Kondor-II형 기뢰탐지함과 기뢰제거함 5척 및 2척의 견인함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발로프(Hans Wallow) SPD의원은 이러한 무기제공이 1982년에 제정된 “전쟁무기 및 기타 군수품 수출에 따르는 정치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비난하였다.

74) 동구권 국가중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도 동독인민군 무기를 구입하고자 요청하였으나, 1992년 6월 15일 독일 국방장관은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독일은 연방안보회의의 승인아래 1992년 7월 20일 약 920만 마르크 상당의 동독인민군 보유 함정 9척을 튀니지에 지원하였다.

구소로서 소량의 훈련장 위험물 처리 및 기술연구 분야에 주로 종사 하던 연구기관이었다. 따라서 처리능력이 제한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추진하였다.

처리대상 탄약의 우선순위는 분산탄약, 잉여탄약, 탄약고를 이동해야 하는 탄약, 저장능력을 초과한 탄약, 기타 탄약 등의 순으로 결정되었다. 독일은 막대한 양의 탄약을 관리, 집결, 경계,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련 및 제3국에 약 9.8만톤을 인계하고, 약 500톤은 적법절차를 거쳐 대내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잔여량을 해체실험과 함께 폐기처리하였다.⁷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독인민군이 보유했던 약 30만톤의 탄약 가운데 1997년말 현재 약 5천톤을 제외한 탄약이 폐기처리되었다.⁷⁶⁾ 그외 동독군의 군용물자는 1996년에 완전히 처리되었다. 국방부는 인민군 무기 및 장비의 판매로 1997년까지 약 15억마르크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독일군의 장비는 군복에서부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서독군의 것들로 이루어졌으며, 동독군의 유품으로는 소련제인 MIG-29전투기가 유일한 예외로 현역에 남아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군통합 과정에서 병역감축으로 인한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 억제를 위해 장비 및 물자의 처리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기업과 계약을 많이 체결하여 재고용이 창

75) 이들 탄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독일은 1990년 11월 당시 약 11,000명의 관리요원을 운영하였다. Die Welt, 1990.11.8. 한편 국방부는 탄약의 운반비용을 고려하고, 운반시 사고발생에 의한 인명 및 환경손상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작업을 대부분 동독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독 소재 방산회사를 참여시켜 직업창출의 효과도 노렸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180.

76)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 204.

출되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연방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물자의 구매시에도 상당량을 구동독지역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였다. 1997년 연방정부의 통일과정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부터 연방군이 장비 및 물자구매에 관한 계약 중 약 40억 마르크 상당의 규모를 구 동독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설분야의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해 구 동독지역 기업과 약 55억 마르크 상당의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앞으로도 매년 약 15~18억 마르크 규모의 시설 및 기지건설사업을 구 동독지역 기업에 불하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⁷⁷⁾

한편 무기, 장비, 탄약의 처리는 독일연방정부와 EC(EU)의 환경처리규정의 틀내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복잡한 산업처리 시설·기술·절차가 필요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⁷⁸⁾ 예를 들어 점화장치의 제거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환경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진공상태에서 점화장치를 폭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거하였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한편 장갑차에 장착된 대 ABC무기 보호설비의 경우 환경적인 문제로 소각될 수 없었다. 소련이 보호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의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은 그냥 저장해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군장교들은 무기처리 과정에서 환경적 요구를 수용함에 따르는 높은 비용에 불만을 가졌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결국 무기 및 장비의 처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작업이었다. 해체 혹은 파괴는 여러 가지 측면, 특히 환경적 요구에 의해 수십억 마르크의 비용을 소요하여 국방예산을 증

77)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 218.

78) 독일연방군의 환경보호 노력에 관하여는 Harald Ertl/Fritz-Felix Zelinka/Ingrid Anker, *Bundeswehr und Umweltschutz. Analyse eines vermeintlichen Widerspruchs*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Heft 47, 1988) 참조.

액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3국에 대한 무기 및 장비의 이전 혹은 수출이 독일에겐 최대의 방편이 되었다.

6. 군수산업 및 군용지 처리

동독의 군수산업은 독일이 동독 국영기업체들의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탁청”(Treuhandanstalt)에 의해 민간부분으로 전환되었다. 신탁청은 1994년 해체되기까지 18,30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던 세계최대의 기업군(企業群)이었다. 이를 통해 구 동독 기업자산의 90%가 서독투자자들에게 이전되었다.⁷⁹⁾

한편 군수산업의 민수용 산업으로의 전환(Conversion)⁸⁰⁾에 대한 독일의 기본원칙, 그중에서도 CDU-CSU-FDP의 보수-자유 연합정부의 원칙은 전환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인들과 시장기구가 전환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즉 동

79) Martin Grundmann, *Regionale Konversion. Zur Theorie und Empirie der Reduzierung der Bundeswehr* (Münster/Hamburg, 1994), pp. 132~138; Gewerkschaft ÖTV (eds.), *Fallstudien zur Regionalen Konversion. Erörterung von Möglichkeiten zukunftsorientierter und arbeitsplatzsichernder Umstrukturierungen militärischer Standorte* (Stuttgart, 1991), pp. 15~19; Reinhold Kowalski, “Wie robust ist der Aufschwung Ost?,”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6(1995), p. 754 참조.

80)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생산산업, 연구 및 실험실, 연구기관, 기타 보유 부동산 등을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고용적 및 경제적 변화를 제도화하고 기획·실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전환의 개념에 관하여는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Report 9 Konver II: Fostering of Conversion by the European Union* (Bonn: B-I-C·C, 1997); Seymour Melman, *An Economic Alternative to Arms Race* (Washington, D. C.: SANE Educational Fund, 1986), p. 13 참조.

독지역의 주들이 전환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재정적 취약으로 인해 동독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⁸¹⁾ 따라서 수년간 군사시설의 재이용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전환을 촉진하고자 5개의 우선지구를 책정하여 1992~94년간 6백만마르크를 투입하였다. 동독지역의 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EC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⁸²⁾

한편 연방군은 동독군과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병영, 군용막사, 저장소, 훈련장, 훈련시설, 지하시설, 항만, 비행장 등과 같은 군용지 및 시설을 인수하였다. 국방부는 동독의 주들에 평가단을 파견하여 동독군과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군사시설물 가운데 향후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둔지 및 시설물들을 실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1991년 “군주둔계획”(Stationierungskonzept)을 확정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계획 이상의 비용이 요구됨에 따라 1993년에 이르러서야 동독군과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군주둔지 및 시설물의 처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⁸³⁾

국방부는 동독군으로부터 총 900여개의 주둔지와 이와 관련된 760

81) Anne Schropp-Konnefke, “Konversion militärischer Liegenschaften (nicht n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erausforderung an die Städte und Gemeinden. Problemaufriß und Lösungsmöglichkeiten aus kommunaler Sicht”, *Newsletter Konversion. Informationsdienst für Forschung und Praxis*, 2(November 1995), pp. 23~31; “Defense Conversion in the New Länder”, *IFO-Digest*, 16(1993), pp. 25~29 참조.

82) Thomas Schmieder, “Zur Konversion der ostdeutschen Rüstungsindustrie”,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5(1995), pp. 521~529 참조.

83) Werner von Scheven, “Die wunderbare Auferstehung der Auftragstaktik”, *Truppenpraxis*, 6(1992), p. 534.

개의 병영시설, 9개의 대규모 훈련장, 19개 단위부대 훈련장, 약 20만 ha의 토지 등을 인수하였다. 동부지역사령부는 그 중 530개의 시설은 향후 동부지역 군구조를 고려하여 유지하였고, 그 외 시설은 연방신탁청과 군용지의 민영화 임무에 있어 2차적 책임을 담당한 연방재정국(Bundesvermögensverwaltung)에 이관하였다. 재정국은 이 새로운 자산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특히 용지를 과거 실제 소유하였던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자료의 파괴와 공산주의자들의 자료말소로 인해 확인되지 못함에 따라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시설은 총 1,426개로서 54개의 비행장, 172개의 주둔지, 160여개의 각종 저장시설, 약 19만ha의 훈련장 등을 포함하여 총 25만ha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련군이 사용하던 시설은 소련군의 철수가 1994년에서야 완료됨으로 인해 연방군의 재배치시점과 상충되어 연방군이 사용하지 못하고 일체를 신탁청과 지방정부에 인계하여야만 하였다.⁸⁴⁾

연방군이 동독군과 소련군으로부터 인수한 대부분의 시설 및 훈련장에는 심각한 환경오염·파괴가 진행되고 있었다.⁸⁵⁾ 또한 대규모의 폐기장비 및 물자와 위험물, 지뢰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탄약까지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을 연방군이 계속 사용하거나 신탁청 혹은 연방·지방정부에 인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화하고 위험 및 환경저해요소를 제거해야만 하였다. 국방부는 민간기업인 IABG를 통해 군주둔지의 환경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환경정화비용으로

84)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 205.

85) 독일연방군과 주독 외국군의 주둔, 군사훈련,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손상에 관하여는 Gi-Woong Son, Umweltmilitarismus. Sozio-Militarismus und Öko-Militarismus (Münster/Hamburg, 1992), pp. 196~207, 237~244 참조.

약 250억 마르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한편 분단의 상징이었던 국경장애물이 통일 이후 동서간 교류에 장애가 되자 독일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철거하고자 하였다. 통일 당시 설치되어 있었던 장애물은 철책 1,445km, 장벽 136km, 후방지역 장벽·철조망 1,410km, 차량기동 방지턱 901km, 관측소 및 지면감시소 857개, 지휘용 병커 60개, 통신선 6,673km, 국경통신소 19,930개, 약 350km에 걸친 미확인 지뢰 약 34,000여개 등이었다.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는 구 동독군 국경수비대 요원 4,900명을 투입하여 베를린장벽 철거, 지뢰 및 철책 제거에 우선권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91년 9월 구 동독군 국경수비대가 해체됨에 따라 국방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민간회사인 토지재활용·처리회사(GRV)에 용역을 주어 1993년 12월 말까지 장애물 제거를 완료하도록 하였다.⁸⁷⁾

한편 통일과 더불어 안보위협감의 감소, 막대한 통일비용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구 서독의 군수산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1990년 110억 마르크에 달했던 군수물자 조달 및 투자비가 1993년 55억 마르크로 반감되었고 같은 기간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수도 28만명에서 10만명이 감소되었다.⁸⁸⁾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최신식 장비와 수송수단으로 잘 무장된 최신동원형 위기대응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이면서 창조적인 방위산업체의 육성에 독일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함을 주장하였다.

86) *Frankfurter Rundschau*, 1993.6.1.

87)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p. 185~188 참조.

88) *Die Welt*, 1993.12.14.

7. 군내 인적 통합

군통합에 있어서 독일연방군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군내적 통합, 즉 동서독출신 장병간에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장 적대적이었던 집단을 하나로 융화시킨다는 것이 통일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연방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인민군에 대한 재교육이었다. 특히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간부출신에 대한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교육 가운데 국민을 위압하던 인민군을 “제복입은 국가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정치교육에 가장 힘을 쏟았다. 장병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주적 국가의 가치와 더불어 국가기구 및 기능, 군의 국가보위 임무, 국가 및 사회에서의 군의 역할, NATO와 연방군과의 관계 등이 교육되었다.⁸⁹⁾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Innere Führung)에는 다음과 같은 10원칙이 강조되었다. 첫째, 군인은 제복을 입은 국가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각적으로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의무도 자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은 군사적 지휘보다 정치적 지휘가 우선함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군인은 국가와 군인 상호간의 충성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군인에게서는 평화시의 근무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함이 내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관은 책임감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려는 내면적 태세를 깨우치고, 유지하며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여섯째, 상관은 지휘권리의 원칙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일곱째, 상관은 모든 결정에 앞

89) W. Mickel·D. Zitzlaff (eds.),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pp. 497~498.

서 하급자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덟째, 상관은 하급자의 임무에 부합하게 훈련, 교육, 교양하고 그들의 인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홉째, 군인은 진정한 군인의 미덕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야 한다. 열째, 상관은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그 변화를 지휘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⁹⁰⁾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은 이미 법적 통일 이전에 서독의 국방장관이 1990년 9월 10일 발표한 인민군장교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1,000여명의 동독장교를 대상으로 3주간 실시되었다. 통일 이후에는 사단 및 연대급 부대단위에 정규과정을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치교육 및 각종 군사훈련이 포함된 교육의 대상 및 교육중점은 <표 10>과 같다. 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출신 장교에 대한 보수교육(Ergänzungslehrgang)으로서 첫 병과 참모교육은 1993년 1월 25일 함부르크 소재 지휘참모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동서독출신 장병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 독일이 추진한 또 다른 정책은 인민군출신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었다. 동독의 장병들은 독일연방군으로 편입되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서독출신 장병급료의 70%를 지급받았으며, 전역후 장교 및 하사관 중 서독출신은 급료의 75%를 연금으로 받는데 반하여, 급료의 35%만을 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과거 동독군에는 영의 출·퇴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전적으로 동독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 인민군출신 장교들의 영의 숙박시설은 매우 부족했고 문화적인 혜택도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민군출신 장병들을 상대적인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게 하여 군내·외에서의

90) Ulrich Simon, *Die Integration der Bundeswehr in die Gesellschaft. Das Ringen um die Innere Führung* (Heidelberg, 1980); Bundeswehr, *Informationsmappe zur Inneren Führung in der Bundeswehr* (Bonn, 1990) 참조.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91)

<표 10> 독일연방군 편입 인민군간부 대상 교육내역

| 구분 | 대상 | 교육중점 | 기간 | 교육장소 | 비고 |
|----------------|------------------|-----------------------------|-----|-------------|--------------|
| 1차 예비 교육 | 중대장 | 군법·교범·기타 예규에 입각한 부대관리 | 2주 | 연방군 | |
| | 중대 선임하사 | 교육훈련 계획실시 | | 장교학교 | |
| | 위병근무 간부 | 지휘통솔 | | 서독군 실무부대 | |
|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 정훈교육 | 2주 | 정전교 참모대 | |
| 기타 보수 교육 | 장기복무자 (복무예정자) | 개인자습 | | | |
| | | 부대실습 | 4주 | 서독군 실무부대 | |
| | | 정훈교육 | 2주 | 지참대 | 예비교육 미실시자 |
| | | 보수교육 | 12주 | | 2년 이상 근무 |
| | | 근무지 안내교육 | | 각부대 | 예정자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91) 독일연방의회 군사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1991년 1월중 271명의 동독지역 출신 장병들로부터 접수한 소원서에서 나타난 첫째가는 이의사항이 금전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군인인데 왜 서독지역출신 군인과 차별대우를 하는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Die Welt*, 1991.3.5.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동서독출신 장병들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 동독출신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하였다. 동독출신 장병들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1990년 11월부로 일반병의 급료를 동서독출신 장병들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부로 전역금 및 크리스마스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보수도 단계적으로 구 서독군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11> 참조). 부대통합을 위하여 보수를 좀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구 동독지역 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고려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mt)과의 업무협조로 전역군인들에게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동독지역 드레스덴 소재 사관학교에서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한편 동독지역으로 파견을 꺼리는 서독지역출신 장병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서독지역으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표 11> 구 동독군 편입자의 구 서독군 대비 봉급 수준

| | | |
|-------------------------------------|-------|-----|
| 1991. 7. 1 | | 60% |
| 1992. 5. 1 | | 70% |
| 1992. 12. 1 | | 74% |
| 1993. 1. 1 | | 80% |
| 1994. 1. 1 | | 85% |
| 1995.1.1일 이후에는 구 동독지역 재정상태에 따라 추가조정 | | |

출처: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서울: 팔복원, 1996)

한편 독일은 병력감축으로 인해 정리된 잉여 군주둔지, 시설, 부동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군의 현대화, 구 동독지역출신 장병들에 대한 주택문제해소 등 이들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

였다.⁹²⁾ 또한 구 동독 지역에 신설된 병무청에 다수의 동독인민군 전역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실업문제의 해소에 다소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독지역 병무청의 임무중 상당부분을 지역사정에 밝은 동독군출신 장병들이 맡게함으로써 직무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는 것은 물론 이들 근무자들이 사회통합과정에 자연스레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독일은 일반병역의무제를 지속하기로 하고 새로운 연방주 출신의 징병자는 대부분 구 서독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인적 통합의 계기로 삼았다. 통일 이후 5년간 200,000명 이상의 구 동독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구 서독 전지역에 걸쳐 군복무를 하였다. 반면 구 서독지역 출신 장병 9,400명이 구 동독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구 서독에서 구 동독지역으로의 이전이 숫적으로 보면 적은 불균형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은 구 동독지역내의 열악하고 부족한 병영여건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군내 인적 통합은 기타 사회분야에서의 통합보다 상대적으로 볼 때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⁹³⁾

92) 통일전 서독의 경우 국토의 15%, 동독의 경우 국토의 4.3%가 군용으로 사용되었다. 통일후 잉여 군부지를 주택지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분을 독일은 실업 및 주택난 해결에 투자하였다.

93) Heinz-Joachim Melder, "Vorbildliche Eingliederung der Streitkräfte in die Gesellschaft", *Das Parlament*, 1~2(5/12 January 1996), pp. 18~19; Heinz-Ulrich Kohr·Ekkehard Lippert·Georg-Maria Meyer·Johanna Sauter, *Jugend, Bundeswehr und Deutsche Einheit. Perspektiven von Jugendlichen aus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zu Bundeswehr und gesellschaftlicher Dienstpflicht (Wehrdienst, Zivildienst), Nation und Ausländern*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Heft 62, 1993) 참조. 물론 군내적 통합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연방군내 극우파경향의 군인들로 인해 1992년 한 해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극우파군인들이 병영 밖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외국인 망명신청자숙소에 대한 방화를 일으킨 것이 20여건이었다.

8. 전승4국 군의 감축

가. 소련군의 철수

동독내에 존재하였던 군사력중 주력부대는 소련의 서부집단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이었다. WP의 “제1전략군”(First Strategic Echelon)이었던 이 정예부대는 80년대 약 40만명의 병력과 5~6,000대의 전차, 1,000~1,200대의 전투기를 배치·운용한 중무장군이였다.⁹⁴⁾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규모는 총 546,000명으로서 그중 군인이 338,000명, 군속·군무원·가족 등이 208,000명이였다. 지상군은 5개군(제1·2군위기갑군, 제3총격군, 제8·20군위군) 총 17개 사단과 제34포병사단, 수개의 로켓여단 및 베를린 주둔 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군은 총 5개 비행사단 규모의 제16전술공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소련군의 철수는 철수일정, 독소철수위원회, 작업반 등에 관해 독일과 소련이 합의한 협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독일은 1990년 10월 9일 소련과 독일주둔 소련군 철수비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 10월 12일 소련군의 독일주둔 조건 및 철군방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군의 철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⁹⁵⁾ 한편 코카서스 회동에서 소련군의 철수비용을 부담하고 더불어 소련에 대

94) Gunter Holzweißig, *Militärwesen in der DDR* (Berlin, 1985), pp. 43~45.

95) 독일은 동 협정을 통해 소련군 주둔기간 소련군 부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주독 소련군의 병영내에서만 훈련 실시 및 훈련병력 13,000명 초과금지, 독일 영공통제소의 사전승인하에서만 소련군 항공기의 비행 및 최저공비행 600m 적용, 전투기와 무장헬기의 주발 및 휴일 비행금지, 소련군 장병과 군속의 독일법 준수 의무화 등이 규정되었다.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p. 194.

한 지속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했던 독일은 고르바초프의 퇴진과 엘친(Boris Yeltsin)의 등장, 그리고 흥미한 소련 내부정국에 불안을 느껴 1994년 말로 예정된 소련군의 철수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992년 12월 16일 독·소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소련군이 1994년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는 대신 소련군의 철수 후 정착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철수비용 부담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독일의 연방하원은 소련측이 요구한 철수지원비 총 120억 마르크를 1990년 10월 30일 승인하였으며, 1992년 12월 16일 독·소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추가적인 철수비용 5억 마르크와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 및 경제지원 약속도 승인하였다.

1991년 10월 1일부터 1994년 8월 31일까지 35개월에 걸쳐 546,000명의 인원과, CFE에 근거하여 폐기된 구형 T-64 전차 및 장갑차 등 총 2,389대의 장비를 제외한 전차 4,209대(주로 T-80), 장갑차 8,209대, 야포 3,682문, 각종 차량 약 109,000대 등의 장비와 물자가 소련으로 이동되는 철수가 진행되었다. 철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탄약의 처리였다. WP는 NATO군이 유사시에 주보급로를 공중공격으로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여 막대한 양의 탄약을 지역별로 저장해 놓았다. 따라서 약 300,000톤이었던 동독군의 탄약보다 9배에 달하는 2,600,000톤의 탄약이 소련으로 이송되어야만 하였다.

소련군의 철수는 독·소 합의에 따라 1994년 8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소련군의 철수에 대한 독일의 지원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통일 후 소련군의 독일주둔 비용 30억 마르크('94년 지원 완료), 철수 수송비용 10억 마르크('94년 지원 완료), 소련내 주택건설 83억 4천만 마르크('97년 지원 완료),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비용 2억 마르크('96년 지원 완료), 조기철수 지원비용 5억 5천만 마르크('94년 지원 완료) 등 계획을 상회한 약 131억 마르크에 달하였다.⁹⁶⁾

한편 소련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독일이 커다란 문제로 부딪친 것은 주둔지, 훈련지 등 소련군이 군사적으로 사용하였던 군용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이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적 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새로 편입된 동독의 주들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는 138,000명의 소련군을 포함하여 약 20만명의 병력이 주둔하였고 지역의 38.5%가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던, 동독에서 가장 군사화된 주로서 소련군철수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지사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독지역의 주들 가운데 야당인 SPD가 집권한 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CDU-CSU-FDP 연합정부는 1992년 2월 그러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였다. 군주둔지 및 시설물의 민수용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정화에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기구에 맡기겠다는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고, 그 결과 이들의 처리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겨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서독지역에 미·영·불의 연합국이 철수함에 따른 군주둔지 및 시설물의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나. 연합군의 감축

유럽에서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NATO의 전략도 수정되었다. 1990년 11월 19일 CSCE의 CFE가 체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96)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pp. 189~190.

1990년 12월 NATO의 군사전략이 재정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고도의 기동력과 재배치능력의 보유를 통한 작전 및 전략적 융통성 유지, 둘째, 다양한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전투대비태세의 단계적 강화, 셋째, NATO군을 신속대응군·주력방위군·증원군의 3범주로 분류하여 단계별 위협요소에 대처, 넷째, 각종 NATO 예하 사령부 감축, 특히 독일지역 내에서 50% 이상 감축 등이었다. 또한 1991년 11월 7일 로마정상회담에서 NATO는 새로운 전략수정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유연대응전략과 전방위개념의 폐지, 둘째, 위협(Threat)의 개념을 위험요소(Risk)로 대체, 셋째,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 하에서 기동성있는 방위전략을 통해 회원국의 안전 보장, 넷째, 기동력을 가진 강력한 소수정예 NATO군의 유지를 통한 위기 대처, 다섯째, 핵전력을 정치적 차원에서의 수단으로만 사용, 여섯째, 전면전 대비 위주의 전력운용에서 평시·국지분쟁시·위기관리시·전시에 따라 융통성있는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등이었다.⁹⁷⁾

이러한 NATO전략의 변화에 따라 독일주둔 NATO군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 기준 독일주둔 NATO 군병력의 규모는 총 402,900명이었으나 추후 275,000이 감축되어 약 128,000명으로 조정되었다. <표 12>는 구체적인 국가별 병력감축 내역을 보여준다. 이로서 소련군의 철수와 더불어 독일내 통일전 150만명에 달했던 군사력이 1994년 50만명으로 축소되었다.⁹⁸⁾

통일 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미국과 긴밀한 군사·안보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97) NATO, *The Alliance's New Strategic Concept: Agre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Rome on the 7th~8th November 1991* 참조.

98) 통일원,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 1994.10.」 (서울: 통일원 통독과정연구 94-III, 1994), p. 46.

이견이 없었으나, 얼마만큼의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병력규모에 따라 군기지, 하부구조 및 시설물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해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었다. 통일 이후 독일주둔 미군의 병력, 육·해·공군별 구성형태, 군장비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이 내렸다.⁹⁹⁾

<표 12> 독일주둔 NATO군 감소 추이

| | 1990년 기준 병력 | 1994년 조정 병력 |
|-------|-------------|-------------|
| 미 국 | 250,000 | 약 75,000 |
| 영 국 | 66,000 | 약 23,000 |
| 프 랑 스 | 44,200 | 15,000 |
| 벨 기 에 | 27,300 | 3,500 |
| 네덜란드 | 7,700 | 5,200 |
| 카 나 다 | 7,700 | 6,300 |
| 계 | 402,900 | 약 128,000 |

출처: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일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1989년 부시-고르바초프간 말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럽에 19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양해하였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그 합의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340,000에 달하였던 유럽주둔 미군병력을 미국은 1990년 7월 225,000명으로 감축할 것으

99) 독일주둔 미군에 관한 미국내 결정과정에 관하여는 President's Adjustment Committee, *Acquiring former Military Bases. Community Guidance Manual III* (Washington, D.C.: Office of Economic Adjustment, 1978); Dennis Steele, "The 1991 Hit List: DoD proposes Base Reductions" *Army*(June 1991), p. 48 참조.

로 계획하였으나 1991년 4월 다시 150,000명으로 수정하였다.¹⁰⁰⁾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1993년 다시 100,00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의 하원은 1994년 4월 찬성 268표, 반대 144표로 1998년까지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중 75%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더욱 감축할 것이란 법을 통과시켰다.¹⁰¹⁾

미군의 철수는 군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독일도 놀랄만큼 신속히 이루어졌다. 1991년 걸프전쟁에 참전했던 유럽주둔 미군 115,000명의 병력은 전쟁 직후 그대로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잔류한 미군에도 변화가 있었다. 통일 이전 서독지역에 주둔하였던 미군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미군은 주요 훈련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적으로 재배치되었다. 또한 과거 동서 대결시기에 전진배치되었던 미군도 독일 국방부의 희망과는 달리 해체되었다.

급작스런 철군으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도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남겨진 병영과 시설물의 처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새롭게 조정되어야만 하였다.¹⁰²⁾ 또한 주둔지, 훈련지 등의 환경오염은

100)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Headquarter Service Directorate for Information Operations and Reports (ed.), *Worldwide Manpower Distribution by Geographical Area, September 30, 1989* (Washington, D.C., 1990), p. 18; General Accounting Office, *Force Structure. Basis for future Army forces in Europe. Report to the Chairman, Subcommittee on Military Forces and Personnel,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1994), p. 29.

101) *Stichworte zur Sicherheitspolitik*, 6(1994), p. 52; "Senate Approves Its Version of Defense Spending Bill", *Congressional Quarterly*(20 October 1994) 참조.

102) 예를 들어 통일 당시 주독 미군부대에는 독일인 44,300명을 포함하여 62,000명의 군무원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3년 7월에는 그 수가 36,000명(독일인 25,10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미군은 1994년 9월까지 추가적으로 9,000명을 더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엄청난 비용을 소요하는 힘든 과제였다. 미국은 독일 주둔 병력의 감축으로 인해 폐쇄되는 주둔지의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내에서는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규제가 해외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부터 사용해온 미군주둔지는 폐유, 유독성화학물질, 화학무기의 저장 등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물론 동독지역에서 나타난 소련군 주둔지에 비하여서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었지만 환경정화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문제 역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여야만 하였다. 예를 들어 라인란드-팔츠주는 “민수전환 계획”(Landes-Überbrückungsprogramm Konversion)을 수립하여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였다.¹⁰³⁾

103) Staatskanzlei Rheinland-Pfalz, *Konversion. Überbrückungsprogramm des Landes zur Bewältigung der Folgen der Abrüstung* (Mainz, 1992) 참조.

IV. 독일 군통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독일의 통일과정은 동독체제내 민주세력의 개혁주도, 동독내 총선거를 통한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요구, 동서독 정부간 통일협상, 동독 의회의 서독체제로의 편입(Beitritt)결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단순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이 이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연상선 상에서 동서독의 군통합도 유혈충돌이 없이 평화적으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군통합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군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있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군통합을 조건지웠던 외부적 틀의 정립과정과 서독의 대응, 독일의 실제적 군통합과정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좀 더 큰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일에 있어서 진행된 이러한 통일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의 역사적 반복은 어느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사실 한반도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한반도의 군통합도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독일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던 독일의 군통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통일된 한반도의 군

사력 규모 및 동맹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바람직한 군통합방안에 응용될 수 있는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독일 군통합 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군통합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상호간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갔으나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 냉전이란 국제 환경이 온존하던 상황 속에서 동서독이 정치·군사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기본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서독은 통일 이후 독일군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란 군통합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없었다. 결국 독일의 경험은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도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통일한국의 군을 건설하기 위한 군통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준비작업을 국내적으로, 남북한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는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협력이 형성되는, 통일 이전 동서독관계, 특히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서독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적대적 협력”의 초입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류·협력에 따른 상호 이해의 증대에 따라 적대적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군

건설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대적 협력에서 “평화공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형성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군비통제, 나아가 군축까지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전제한 바탕위에 통일한국의 군통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적대적 협력이 진정한 평화공존, 나아가 군비통제와 군통합 논의로 진전되기에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대적 협력이 막 옴트기 시작한 한반도의 경우, 협력의 폭과 규모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다른 한편으로 국내·외적 수준에서, 남북한관계 및 다자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켜가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 구도내에서 적대적 협력의 심화가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어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통일독일의 군사·안보 문제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전승4국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합의도출 여부가 독일의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독일을 점령할 수 있는 권리, 독일의 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통일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승4국이 국제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사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한반도에 있어서는 주변4국이 분단을 관리할 권리나 분단의 극복에 관여할 권리가 국제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분단의 극복은 법률상(*de jure*) 남북한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4국이 본단의 극복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질 수 없다. 특히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주변4국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는 통일자체는 물론 남북한 군통합을 조건지우는 외부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독일의 사례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이 전제될 때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의 통일에 대한 반대 명분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한주민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통일에의 의지를 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에 대한 남북한주민의 동의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는 예비절차가 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통일한국의 군사·안보문제, 특히 군사력 규모와 동맹체제의 성격이 주변4국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주변4국의 공통적인 원칙적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이 자국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가 통일 전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주변4국의 공통된 요구일 것이다. 더불어 남북한이 맺고 있는 안보협력체제의 재정립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은 평화통일과정에서 북한과 더불어 통일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속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통일이 주변국 어느 국가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님에 주변국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타국의 국익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국익과 함께 하는 군사·안보정책을 통일외교의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가시화되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상이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독식의 양면전략은 물론, 나아가 다면전략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이 통일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변4국의 공통적 이해일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독일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력의 기본 틀이 될 병력의 규모를 남북한이 통일한국국의 국방정책과 국내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규모를 설정한다. 병력 및 장비의 규모는 당시 주변4국의 병력·장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나, 통일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는 대폭적으로 감축된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군사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첫째,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동의하는데, 둘째, 역내 재래식무기감축을 추진하는데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독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특히 주변4국은 남북한에 군사력의 대폭 감축을 강제한다는 국제적 시각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통일 이후 군사력을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공표하는 형식을 원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한반도의 통일에, 통일한국군의 병력 및 장비규모의 확정에 관해 국제법적으로 개입권한이 없는 주변4국이 그들의 명시적 개입을 부담

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군사력감축 발표를 자발적 형식으로 하되 이를 위 두가지 우리의 이해관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통일한국군의 병력 및 장비규모는 통일한국이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통일의 협상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일 이후 실제 통일한국이 얼마만큼의 병력과 장비를 운영·유지할 것인가는 통일한국의 국방정책과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병력 및 장비감축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통일한국에 미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주변4국과의 협의를 통해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의선까지 신축성있게 감축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통일 즉시 합의된 병력·장비수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최종 상한선 수준으로 병력·장비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합의된 규모로 병력·장비감축이 완결된 시점에서 주변4국의 병력·장비 규모 혹은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한국군의 병력·장비 수준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도 통일과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군사력 감축으로 인해 처리되어야 할 잉여 군장비·무기·시설의 해외이전 혹은 수출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에 관한 국제적 협의 속에서 역내 재래식무기의 감축을 위한 「동북아재래식무기감축협정」(가칭)의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은 동서독군의 군사력 감축과 CFE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사례를 동북아지역에 응용하려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가 대폭 감축됨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긴장요인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은 역내 각국의 군사적 공세능력을 크게 낮추는 것이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감축이 가져올 파생적, 특히 정치·경제·군사적 효과가 주변4국 모두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변4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재래식무기감축의 대상으로는 우선 육군의 공격용 무기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추진하고, 이어서 해·공군력의 감축문제와 병력상한선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계속되도록 한다. 러시아의 경우 감축의 대상은 우랄산맥 이동의 군사력이 될 것이다. 동북아재래식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될 경우 협정과는 별도로, 혹은 협정의 내용속에 체약국 서로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닌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건설할 것이며, 타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안전성을 해치는 무력사용과 위협행위를 자제할 의무나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정치적 선언, 이른바 「평화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통일한국의 안보동맹체제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북한은 소련과 체결하였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1996년 공식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중국과만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 주변4국의 통일한국의 안보동맹체제에 대한 입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동맹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과정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승4국이, 특히 소련이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허용한 것은 그것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의 안보동맹체제 형성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주변4국에 의해 확보된 바탕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이 남북한간에 평화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통일 당시 남북한이 각각 미국 및 중국과 맺고 있는 동맹체제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동맹체제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중국과 동맹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통일한국이 어떠한 동맹체제에도 가담하지 않는 방안, 나아가 통일한국이 주변국들과 지역안보협력체제를 새로이 형성하여 다자안보동맹을 맺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러한 유형 가운데 주변4국의 이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형성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변4국과 군사·안보적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 군수뇌부의 상호방문을 통해 안보관련 주요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군사교류 및 협력을 점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한·미안보협력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지역안보협력체제 형성에 상호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

물론 통일한국이 미국과 안보동맹체제를 지속하는 방안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합의하고 중·러가 양해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독일의 NATO잔류 전제조건이 보여주듯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에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독일이 NATO의 회원국으로 잔류하되 구 동독지역에 대한 외국군 주둔 및

핵·생화학무기의 배치를 금지한 사례가 전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 이후 군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동서독지역출신 장병간의 인적 통합이다. 이점은 남북한 군통합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 군내부적 통합, 즉 남북한출신 장병들 서로간에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가장 적대적이었던 남북한 장병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과정은 실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여기에는 인원 및 조직의 개편, 인사관리, 교육훈련, 병역 및 복지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통일 직후에는 국군과 인민군 출신 장병이, 통일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는 남북한출신 장병이 통일한국사회 내에서, 그리고 통일한 국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이질성 극복을 위해 국군과 인민군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¹⁰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서로간 이해의 상충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 장병들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통일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통일이 유구한 단일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한 우리민족 모두에게, 후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교육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남북한출신 장병들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

104)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군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1호 (1996), pp. 173~196 참조.

중하는 통일한국군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그 임무를 숭고하게 받아들여 충정으로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교육과 더불어 독일연방군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앞서 언급한 정훈교육과 같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군운영은 남북한출신 장병들간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병력이 대폭 감소하게 됨에 따라 남북 양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일반병역의무제를 존속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일반병역의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군이 군내의 통합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파급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병역의무제의 유지이다.

일반병역의무제는 통일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병역평등의 지주이다. 군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수하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場)이다. 병역의무제로 징병된 장병들이 군 내에서의 통합체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기타 사회부분에서의 통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회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병역의무제의 유지는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안보태세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병력감축을 전제하고 병역의무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 병역복무대상자와 현역입영자간의 수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즉 소수의 징병으로 인하여 병역평등의 근거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입영자 외의 대상자들이 사회분야, 자연재해 구호분야, 환경보호 및 기타 지원분야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주는 교육적인 효

과를 얻을 수 있다.¹⁰⁵⁾

통일 이후 통일한국군에 충원되는 남북한출신 장병들이 각각의 지역에 교차적으로 근무하여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남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통일한국군은 “하나의 군대”로 육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군내 인적 통합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며, 통합의 영향은 군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05) 손기웅, “통일한국의 군통합 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1997), pp. 283~304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0~1991」.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 민족통일연구원 편.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주독대사관.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 감축(CFE) 협정,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7」.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0.11.
- _____.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 _____.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 _____.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21」.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3.8.30~9.5.
- _____. 「동서독간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통독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122」. 주독대사관 무관부, 1993.9.
- 통일원.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부록」. 서울: 통일원, 1996.
-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서울: 팔복원, 1996.
- 한민구. 「통일독일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통합작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Albrecht, Ulrich. *Die Abwicklung der DDR: Die "2+4 - Verhandlungen". Ein Insider-Bericht*. Opladen, 1992.

Bahr, Egon·Dieter S. Lutz (eds.). *Gemeinsame Sicherheit. Idee und Konzept, Bd. I: Zu den Ausgangsüberlegungen, Grundlagen und Strukturmerkmalen Gemeinsamer Sicherheit.* Baden-Baden, 1986.

_____. *Gemeinsame Sicherheit. Dimensionen und Disziplinen, Bd. II: Zu rechtlichen, ökonomischen, psychologischen und militärischen Aspekten Gemeinsamer Sicherheit.* Baden-Baden, 1987.

Bald, Detlef·Reinhard Brühl·Andreas Prüfert (eds.). *Nationale Volksarmee - Armee für den Frieden: Beiträge zu Selbstverständnis und Geschichte des deutschen Militärs 1945~1990.* Baden-Baden, 1995.

Biehl, Heiko. *Die neue Bundeswehr. Wege und Probleme der Anpassung der deutschen Streitkräfte an di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Strausberg: SOWI-Arbeitspapier 12, 1998.8.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Report 9 Konver II: Fostering of Conversion by the European Union.* Bonn: B·I·C·C, 1997.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RÜT II 1.* Bonn, 5 October 1991.

_____. *Weißbuch 1994.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Lage und Zukunft der Bundeswehr.* Bonn, 1994.

_____. *DOKNR: NN 7623. 40 Jahre*

- Bundeswehr, 5 Jahre Armee der Einheit.* Bonn, 1995.
-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stab.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Bundeswehr-Streitkräfte der Einheit. Drei Jahre Bundesweh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 _____.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Die Bundeswehr der Zukunft. Bundeswehrplan '94.* Bonn, 1993.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 *Mitteilung AN DIE PRESSE XXVII/59.* Bonn, 1990.
- Bundeswehr. *Informationsmappe zur Inneren Führung in der Bundeswehr.* Bonn, 1990.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 Deutscher Bundestag. *Dokument 12/2026, Attachment 1.*
- _____. *Verteidigungsausschuß.* 19 December 1991.
- _____. *Verteidigungsausschuß.* 21 January 1994.
- Ertl, Harald·Fritz-Felix·Zelinka·Ingrid Anker. *Bundeswehr und Umweltschutz. Analyse eines vermeintlichen Widerspruchs.*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Heft 47, 1988.
- Gewerkschaft ÖTV (eds.). *Fallstudien zur Regionalen Konversion. Erörterung von Möglichkeiten zukunftsorientierter und arbeitsplatzsichernder Umstrukturierungen militärischer Standorte.* Stuttgart, 1991.
- Grundmann, Martin. *Regionale Konversion. Zur Theorie und*

- Empirie der Reduzierung der Bundeswehr.*
Münster/Hamburg, 1994.
- Gunter Holzweißig. *Militärwesen in der DDR.* Berlin, 1985.
- Heydrich, Wolfgang·Hans-Dieter Lemke·Joachim Rohde (eds.). *Die Bundeswehr am Beginn einer neuen Epoche. Anforderungen an die Streitkräfte und ihre rüstungsindustrielle Basis.* Baden-Baden, 1996.
- Hübner, Emil·Horst-Hennek Rohlf.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92.* München, 1991.
- Klein, Paul·Rolf P. Zimmermann (eds.). *Die zukünftige Wehrstruktur der Bundeswehr. Notwendige Anpassung oder Weg zur Zwei-Klassen-Armee?* Baden-Baden, 1997.
- Kohr, Heinz-Ulrich·Ekkehard Lippert·Georg-Maria Meyer·Johanna Sauter. *Jugend, Bundeswehr und Deutsche Einheit. Perspektiven von Jugendlichen aus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zu Bundeswehr und gesellschaftlicher Dienstpflicht (Wehrdienst, Zivildienst), Nation und Ausländern.* München: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Heft 62, 1993.
- Melman, Seymour. *An Economic Alternative to Arms Race.* Washington, D. C.: SANE Educational Fund, 1986.
- Mickel, W.·D. Zitzlaff (eds.).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 MOD Germany. *Current Aspects of German Security Policy.* Bonn, 1991.
- _____. *German Force Planning for the 1990s: The*

- German Armed Forces after Unification*. Bonn, 1991.
- NATO. *The Alliance's New Strategic Concept: Agre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Rome on the 7th ~8th November 1991*. Brussels, 1991.
- Nolte, Ernst. *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München/Zürich, 1974.
- Simon, Ulrich. *Die Integration der Bundeswehr in die Gesellschaft. Das Ringen um die Innere Führung*. Heidelberg, 1980.
- Son, Gi-Woong, *Umweltemilitarismus. Sozio-Militarismus und Öko-Militarismus*. Münster/Hamburg, 1992.
-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1991.
- Unabhängige Kommission fü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Die künftigen Aufgaben der Bundeswehr. Abschlußbericht und Empfehlungen*. Bonn, 1991.9.24.
- Voigt, Wolfgang. *Streitfall Frieden*. Heidelberg, 1984.
- Zelikow, Philip·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ss./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2. 논문

- 손기용. “독일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관한 전승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일연구논총』. 5권 1호, 1996.
- _____.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군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1호, 1996.
- _____. “통일한국의 군통합 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1997.
- 신인호.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 24, 1998.
- Brockmann, Hilke. “Das wiederbewaffnete Militär. Eine Analyse der Selbstdarstellung der Bundeswehr zwischen 1977 und 1994”. *Soziale Welt '94: Zeitschri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raxis*. 3, 1994.
- Bruns, Wilhelm. “Zur sicherheitspolitischen Roll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chiv*. 2, 1988.
- Grafe, Roman. “Niemals Zweifel gehabt. Der Prozeß gegen die Grenztruppen-Führung der DDR”.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6, 1996.
- _____. “Ziele mit dem ersten Feuerstoß vernichten. Urteil gegen die Militärführung der DDR”.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4, 1997.
- Kowalski, Reinhold. “Wie robust ist der Aufschwung Ost?”.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6, 1995.
- Kuhlen, Klaus. “Das Neue Heer. Die Konzeption”. *Soldat und Technik*. 3, 1996.
- Melder, Heinz-Joachim. “Vorbildliche Eingliederung der Streitkräfte

- in die Gesellschaft". *Das Parlament*. 1~2, 5/12 January 1996.
- Meusch, Andreas. "Frankreich und die deutsche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s.).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 Nassauer, Otfried. "An Army Surplus - The NPA's Heritage". Edward J. Laurance·Herbert Wulf (eds.). *Coping with Surplus Weapons: A Priority for Conversion Research and Policy*. Bonn: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1995.
- Reeb, Hans-Joachim.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8, 1992.
- Rühe, Volker. "Bundeswehr und europäische Sicherheit". *Europäische Sicherheit*. 1, 1996.
- Scheven, Werner von. "Die wunderbare Auferstehung der Auftragstaktik". *Truppenpraxis*. 6, 1992.
- Schmieder, Thomas. "Zur Konversion der ostdeutschen Rüstungsindustrie".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5, 1995.
- Schropp-Konnefke, Anne. "Konversion militärischer Liegenschaften (nicht n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erausforderung an die Städte und Gemeinden. Problemaufriß und Lösungsmöglichkeiten aus kommunaler Sicht". *Newsletter*

- Konversion. Informationsdienst für Forschung und Praxis.*
2, November 1995.
- Seidelmann, Reimond. "Deutsch-deutsche Rüstungskontrollpolitik?".
Deutschland-Archiv. 5, 1984.
- Wolffsohn, Michael. "Der außenpolitischen Weg zur deutschen
Einheit". Eckhard Jesse·Armin Mitter (eds.).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
Gesellschaf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2.
- "Blick nach vorn".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18, 1990.
- "Defense Conversion in the New Länder". *IFO-Digest.* 16, 1993.
- "Die Nationale Volksarmee(NVA)". Bundesministerium für inner-
deutsche Beziehungen (ed.). *DDR Handbuch* Köln, 1985.
-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mi.* 3, 1997.
- "Schwerpunkt: (K)Eine Zukunft der Bundeswehr". *Friedens-
FORUM: Rundbrief der Friedensbewegung.* 4, 1994.
- "Wehrpflicht, Dienstpflicht, Zivildienst". *ami.* 10, 1994.

3. 기타

Der Spiegel.

Die Welt.

Die Zeit.

Esslinger Zeitung.

Europa-Archiv.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rankfurter Rundschau.

“London Declaration on a Transformed North Atlantic Alliance”.

London, 6 July 1990.

Süddeutsche Zeitung.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 | | | |
|-------|----------------------------------|----------------------|---|---------|
| 96-01 |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최진욱 | 저 | 6,000원 |
| 96-02 |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이우영 | 저 | 6,000원 |
| 96-03 |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김학성 | 저 | 6,500원 |
| 96-04 |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황병덕 | 저 | 6,000원 |
| 96-05 |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손기웅 | 저 | 7,000원 |
| 96-06 |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 정영태 | 저 | 6,000원 |
| 96-07 |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김국신 | 저 | 4,000원 |
| 96-08 |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 | 10,000원 |
| 96-09 |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 오승렬 | 저 | 6,500원 |
| 96-10 |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조민 | 저 | 5,000원 |
| 96-12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 저 | 5,000원 |

| | | | |
|-------|--|----|--------|
| 96-13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 저 | 5,500원 |
| 96-14 |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 저 | 7,500원 |
| 96-15 |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 저 | 4,500원 |
| 96-16 |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 저 | 5,000원 |
| 96-17 |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 저 | 4,000원 |
| 96-18 |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 공저 | 7,000원 |
| 96-19 |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 저 | 5,500원 |
| 96-20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 저 | 3,500원 |
| 96-21 |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 저 | 6,000원 |
| 96-22 |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 저 | 8,500원 |
| 96-23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 공저 | 8,500원 |
| 96-24 |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 저 | 4,500원 |
| 96-25 |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 저 | 4,000원 |

| | | | | |
|-------|---------------------------------------|------------|----|--------|
| 96-26 |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이헌경 | 저 | 6,500원 |
| 96-27 |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 전동진 | 저 | 4,500원 |
| 96-28 |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안인해 | 저 | 5,500원 |
| 96-29 |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 최춘흙 | 저 | 3,500원 |
| 97-01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 강원식 | 저 | 5,000원 |
| 97-02 |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 이교덕 | 저 | 3,500원 |
| 97-03 |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 제성호 | 저 | 7,000원 |
| 97-04 |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 신상진 | 저 | 4,000원 |
| 97-05 |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 손기웅 | 저 | 5,000원 |
| 97-06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박영호 | | |
| | | 배정호 | | |
| | | 신상진 | | |
| 97-07 | 통일한국의 위상 | 조한범 | 공저 | 5,500원 |
| 97-08 |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 옥태환 김수암 | 공저 | 6,000원 |
| 97-09 |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 김성철 | 저 | 4,500원 |
| | | 조한범 | 저 | 4,500원 |

| | | | |
|-------|--|---|--------|
| 97-10 |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 저 | 4,000원 |
| 97-11 |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 저 | 5,000원 |
| 97-12 |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 저 | 6,000원 |
| 97-13 |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 저 | 6,000원 |
| 97-14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 저 | 3,000원 |
| 97-15 |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 저 | 5,000원 |
| 97-16 |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 저 | 5,000원 |
| 97-17 |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 저 | 4,500원 |
| 97-18 |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 저 | 5,000원 |
| 97-19 |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 저 | 4,500원 |
| 97-20 |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 저 | 5,000원 |
| 97-21 |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 저 | 5,500원 |
| 97-22 |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 저 | 3,000원 |
| 97-23 |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 저 | 6,000원 |
| 97-24 |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 저 | 4,000원 |

| | | | | |
|-------|--|---------------------------------|----|--------|
| 97-25 |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 박종철 | 저 | 5,500원 |
| 97-26 |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 허문영 | 저 | 7,000원 |
| 98-01 |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 김병로 김성철 | 공저 | 6,500원 |
| 98-04 |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 임순희 | 저 | 4,500원 |
| 98-05 |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 제성호 | 저 | 6,500원 |
| 98-06 |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 이교덕 | 저 | 4,500원 |
| 98-07 |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 공저 | 6,000원 |
| 98-08 |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 홍관희 | 저 | 4,000원 |
| 98-09 |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 박종철 | 저 | 6,000원 |
| 98-1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 신상진 | 저 | 4,000원 |
| 98-11 |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 임강택 | 저 | 7,500원 |
| 98-12 |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 박영호 | 저 | 5,500원 |
| 98-13 |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 손기응 | 저 | 5,500원 |
| 98-14 |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 옥태환 | 저 | 4,500원 |

| | | | | |
|-----------------|--|----------------------|---|---------|
| 98-15 |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4,000원 |
| 98-16 |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 김규륜 | 저 | 3,500원 |
| 98-17 |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 황병덕 | 저 | 6,000원 |
| 98-18 |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 김영운 | 저 | 6,000원 |
| 98-19 |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 최춘흠 | 저 | 3,000원 |
| 98-20 |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 배정호 | 저 | 4,000원 |
| 98-21 |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 김영춘 | 저 | 3,500원 |
| 98-22 |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 전성훈 | 저 | 7,500원 |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1996 | | | | |
| | |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공저 | | 10,000원 |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공저 |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1997 | | | | |
| | | 김병로 송정호 공저 | | 10,000원 |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 김병로 송정호 공저 | | \$11.95 |

| | | |
|--|-------------------------|---------|
| 북한인권백서 1998 | | |
| | 최의철 송정호 공저 | 7,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 | |
| | 최의철 송정호 공저 | \$11.95 |
| 북한인권백서 1999 | | |
| | 최의철 서재진 계성호의공저 | 7,0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 | |
| 96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 6,000원 |
| 97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 5,000원 |
| 98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 5,000원 |
| ■ 학술회의 총서 | | |
| 96-01 |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7,000원 |
| 96-02 |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9,000원 |
| 96-03 |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000원 |
| 96-04 |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7,500원 |
| 96-05 |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 7,000원 |
| 96-06 |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 8,500원 |
| 97-01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 6,500원 |
| 97-02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7,500원 |

| | | |
|------------------|----------------------------|---------|
| 97-03 |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 7,000원 |
| 97-04 |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 8,500원 |
| 97-05 |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 4,000원 |
| 97-06 |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 7,500원 |
| 98-01 |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 9,000원 |
| 98-02 |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 7,500원 |
| 98-03 |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5,500원 |
| 98-04 |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 6,500원 |
| 98-05 |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5,500원 |
| 98-06 |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 2,500원 |
| ■ 통일문화시리즈 | | |
| 96-01 |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 10,000원 |
| 96-02 |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 9,500원 |
| 97 | 바람직한 통일문화 | 9,500원 |
| ■ 논총 | | |
| |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 10,000원 |
| |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 10,000원 |
| |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 10,000원 |
| |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 10,000원 |
| |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 10,000원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 | | | |
|------------------------------|----------------------|-------------|-------------|
| 성 명 | | | |
| 근 무 처 | | | |
| | 직 위 | | |
| 간 행 물 받을 주소 | (우편번호 :) | | |
| 연 락 처 | 전 화 | | F A X |
| | 전자메일 | | |
| 전 공 및 관심분야 | | | |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199 년 월 일 | | | |
| 신청인 | | | (인)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